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의 의의와 가치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Junggwanjungyojoohae* Vol.5
Printed in Ulhae Metal Type

임기영 (Lim, Ke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의 가치 |
| 2. 『貞觀政要』의 편찬 및 내용 | 6. 맺음말 |
| 3. 『貞觀政要』 판본의 유통과 활용 | <참고문헌> |
| 4. 전존 판본 | |

< 초 록 >

이 연구는 『貞觀政要』의 편찬자, 편찬 동기 및 그 시기나 내용 등 판본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을 정리하고 중국의 간행 정황 및 판본의 유통 사례를 관련 사료는 물론 전존하는 판본 조사를 통하여 개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판본 유입 및 국내 유통 양상 또한 소장 기관의 판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찬 사료 및 서목 등 2차 자료에 수록된 정황 등을 망라하여 관련 기록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개별 판본에 대한 조사로 간행 정황과 기록에 대한 검토 후, 판본의 전반적인 간행 계통까지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통된 여러 판본 중 특히, 전존하는 유일본으로 알려진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에 대하여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이 판본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貞觀政要』 판본 중 각별한 인체 문화사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판본이 가지는 특수성과 자료적인 가치는 물론, 간행 계통이나 수록 내용 및 기존 판본과 다른 주석의 방식 등 다양한 출판사적인 의미를 다루어 보았다.

要語: 『貞觀政要』, 乙亥字, 세조, 『貞觀政要註解』, 唐太宗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basic bibliographies of the *Jeunggwanjeungyo*, the motives, the timing and contents of the book. In addition, the circulation situation and the circulation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book were briefly reviewed through a survey of the related articles as well as the related edition.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influx of Korean version and domestic distribution pattern. We investigated the editions of the domestic institution and investigated the contained in bibliographic materials such as observations and bibliographies.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publication and the records of the individual editions, we reviewed the overall publication system of the editions.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es on the topic of the volume 5 of the *Jeunggwanjeungyojoohae* distributed in Korea. This book is known as the only version. This edition is considered to be a historical meaning among the various books published in our country. From this point of view, we examined the specificity and the data value of this book. We have also dealt with various publishing meanings such as the publication system of the book, the contents of the book, and the way of annotation different from existing literature.

Key words: 『*Jeunggwanjeungyo*』, Uelhae Metal Type, King Sejo, 『*Jeunggwanjeungyojoohae*』, Tang King Taejong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 사서(impussiant@knu.ac.kr)

접수일: 2018년 7월 23일 최초심사일: 2018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21일
서지학연구, 제75집, 5-4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5]

1. 머리말

당 태종 李世民(599-649)은 청나라 康熙帝와 더불어 명군의 표상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걸출한 군사가이자 정치가였고, 그를 포함한 봉건 제왕의 통치 가운데 ‘貞觀의 治’는 역사를 아울러 가장 두드러진 治世이자 盛世였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도 하다.

이 연구는 唐代 吳兢(661-721)이 편찬한 당 태종의 정치 문답집이자 통치 지침서인 『貞觀政要』의 국내 수용 및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5세기 을해자로 인출된 『貞觀政要註解』는 국립중앙도서관에 1책만 남아 전하는 판본으로 자료적인 가치나 인쇄사적인 의미가 각별한 문헌이다. 이에 이 판본이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貞觀政要』에 대한 앞선 연구로 그 내용에 대하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번역본이 발간되는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판본이나 서지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연구로 황천오¹⁾는 藏書閣에 소장된 임진자본의 교정쇄에 대한 해제와 교정 전후본의 본문 비교를 수행한 바 있고, 김소희²⁾는 동일 판본에 대하여 금속활자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방식 및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2. 『貞觀政要』의 편찬 및 내용

2.1 편찬자

『貞觀政要』를 편찬한 吳兢(670-749)은 劉知幾(661-721) 등과 더불어 唐나라의 저명한 역사가로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한 전기와 행적은 後晉의 劉昫 등이 10세기 중엽 편찬한 『舊唐書』 『吳兢傳』에 소략하게 소개³⁾되어 있다. 반면, 11세기 중엽 증보된 『新唐書』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吳兢의 일대기를 소개⁴⁾하였고, 또 그가 저술하였거나 편찬에 참여한 編·著書들은 『舊唐書』의 『經籍志』와 『新唐書』 『藝文志』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史書에 누락된 것들 중 일부는 『唐會要』 권63과 권64의 『修國史』條와 『史館』條에서 보충이 되고, 또한 『宋史』 『藝文志』에도 吳兢 저술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앞선 연구에서 吳兢에 대한 전기와 저술들은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⁵⁾⁶⁾ 있으므로, 그의 일대기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태어난 곳은 지금의 河南省 開封市인 汴州의 浚儀 지역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1) 황천오, “貞觀政要,” 『國學資料』 25(1977), 1-7.

2) 김소희, “조선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 연구,” 『서지학연구』 제61집(2015. 3), 101-123.

3) 『舊唐書』 卷102 『列傳』 제52 <吳兢傳>. “吳兢汴州浚儀人也勵誌勤學博通經史宋州人魏元忠 …”

4) 『新唐書』 卷132 『列傳』 제57 <吳韋蔣柳沈傳>. “吳兢汴州浚儀人少厲誌貫知經史方直寡諧比惟與魏元忠朱敬則遊二人者當路薦兢才堪論撰詔直史館修國史 …”

5) 謝保成, “試解『貞觀政要』成書之謎,” 『史學月刊』 1993年 02期, 29.

6) 許強, “談吳兢『貞觀政要』的編撰特色,” 『圖書館學刊』 2006年 03期, 123.

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경학과 사학에 박통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해박한 식견을 토대로 일찍부터 여러 史書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吳兢이 중앙 관료로 처음 벼슬로 입문한 시기는 그의 나이 35세 때인 則天武后(624-705) 長安 3년(703)이었다. 그는 당시 直史館으로 임명되었고, 연이어 修國史를 거쳐 慶雲 3년(712)에는 水部郎中兼 判刑部郎中知國史事에 봉해졌다. 이 시기 그는 『則天實錄』의 豫修 작업을 하는 등 이미 史官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후 開元 7년(719) 昭文館學士를 거쳐, 開元 9년(721)에는 著作郎修國史를 맡는 등 그의 관직 생활을 이어갔다.

한편, 사관으로 吳兢의 저술 활동 또한 그의 중년이었던 30세를 전후한 시기부터 확인된다. 吳兢이 단독으로 저술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완성한 찬술서들은 주로 實錄이나 史書들이 대부분이었다. 吳兢의 編·著서를 수록하고 있는 4종의 史書 즉, 『舊唐書』와 『新唐書』의 「吳兢傳」, 『舊唐書』 「經籍志」와 『新唐書』 「藝文志」, 『唐會要』 권63 및 권64, 『宋史』 「藝文志」에는 그의 저작을 종합하여 살필 수 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吳兢의 찬술서는 모두 27종 968권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史官 吳兢의 왕성한 史書 편찬 활동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더불어 그의 저술 중에는 劉知幾(661-721)와의 친분으로 劉氏 집안 족보 편찬 활동에도 함께 하였던 이력은 특기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기 사료에서는 吳兢이 편찬 또는 찬술하였던 책의 서명은 밝히고 있으나, 그 시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서 외에 현재까지 알려진 吳兢의 시문 작품으로는 「永泰公主挽歌」와 「爲桓侍郎讓侍中表」 등 모두 13수⁷⁾에 달한다.

2.2 편찬 동기 및 시기

2.2.1 편찬 동기

개별 저작의 찬술 동기를 언급할 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목적 또는 해당 저술이 편찬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밝히는 것은 문헌 연구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史書의 편찬은 개인의 시문이나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는 저작들의 편찬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찬술 활동이었다. 즉, 史官이라는 관료의 공적 신분으로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과 개인적 차원의 집필과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뚜렷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관찬서의 편찬에는 개별 저작에 비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고 구체적인 간행 동기를 가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貞觀政要』의 편찬 의도 또한 唐 태종조에 활발하게 진행된 역사서의 편찬 사업과 무관치 않다. 吳兢이 실록과 史書類를 편찬한 시점은 8세기 초반 즉, 그의 중장년기 이후의 시점이었고, 학자마다 일부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貞觀政要』의 저술 시점 또한 이 史書類의 편찬 시점과 궤를 같이한다. 다시 말해 『貞觀政要』의 편찬 동기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이 시기 서적 간행의 동시적 관점에서 吳兢을 비롯한 중앙의 여러 史官들이 왕성한 史書 편찬 활동을 펼치던

7) 吳兢 撰, 謝保成 集校, 『貞觀政要集校』(北京: 中華書局, 2003), 614.

도중⁸⁾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貞觀政要』 또한 이와 같은 관찬 역사서 편찬 활동의 일부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편찬 동기의 또 다른 관점으로는 史官으로서 吳兢의 개인적 열의와 열정 또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저술이라는 측면이 대두된다. 이는 吳兢이 『貞觀政要』를 저술하면서 올린 「上表文」과 「序文」에 잘 드러나고 있다. 즉, 「上表文」에서는 태종 황제의 貞觀之治는 대대로 후대인에게 가르칠만한 규범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大政을 널리 밝히고 史書에 밝게 기록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⁹⁾는 찬자의 사명감이 엿보인다. 동일한 맥락에서 「序文」에서 吳兢은 태종 황제의 업적에 대하여 옛 역사를 소상히 참고해 그 요지를 간추려 정리하였음¹⁰⁾을 밝혀두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 편찬 업무의 시작은 皇命으로 시작된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吳兢의 서문에서 治道를 기록하되 명에 따라 부족한 자신이 황제의 업적에 대해 들은 바를 수집하여 편찬하였다¹¹⁾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편찬의 皇命은 편찬 시점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없으므로 中宗(재위 684-711)인지 睿宗(재위 711-713) 또는 玄宗(재위 713-756)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貞觀政要』가 찬술된 8세기 초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吳兢의 활동기는 唐太宗의 후궁이었던 則天武后(624-705, 在位 685-704)가 弘道 1년(683) 보위에 오른 中宗을 1년 만에 폐위시키고, 이듬 해(684) 어린 睿宗(662-716, 在位 684-688)을 앞세워 공포 정치를 펼쳤다. 이후 690년에는 睿宗마저 鳳座에서 끌어내린 뒤 권력을 잡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中宗(656-701, 在位 684-710)의 세력과는 끊임없이 마찰을 이어가던 시기¹²⁾였다. 이에 吳兢은 則天武后의 진흥을 억제하고, 唐의 전통성을 옹호하기 위한 『貞觀政要』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를 편찬하여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관점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2 편찬 시기

吳兢에 대한 기록이나 그의 전기를 다룬 사료는 다소 전하지만, 공개롭게도 『貞觀政要』의 편찬 시기를 밝힌 문헌은 찾기 어렵다. 그리고 吳兢이 『貞觀政要』를 편찬한 뒤에 올린 「上表文」과 「序文」 및 후대 중간본의 서문이나 발문 또는 이 시기의 각종 사료나 문헌 상에서도 이 책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더불어 吳兢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貞觀政要』의 「上表文」과 「序文」 역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들의 작성 시기 또한 명확하지 않아 『貞觀政要』의 찬술 시점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결국 『貞觀政要』는 학자에 따라서 사료를 통한 정황적

8) 許強, “談吳兢『貞觀政要』的編撰特色,” 『圖書館學刊』 2006年 03期, 123.

9) 洪武 3년(1370) 刊 『貞觀政要』 卷1 「上貞觀政要表」. “…垂代立教之規可以弘闡大猷增崇至道者竝煥乎國籍作鑑來葉…”

10) 洪武 3년(1370) 刊 『貞觀政要』 卷1 「序文」. “…所聞參詳舊史撮其持要學其宏綱詞兼質文義在懲勸人倫之紀備矣…”

11) 成化 元年(1465) 內府刻本 『貞觀政要』 卷1 「序文」. “…增崇至道者爰命下才備加甄錄體制大略咸發成規於是綴集…”

12) 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上)』(서울: 지영사, 1998), 448.

추정 또는 「上表文」의 작성 시기와 「序文」에 밝힌 ‘衛尉少卿兼修國史弘文館學士’라고 밝힌 吳兢의 벼슬 등으로 미루어 각자 다양한 관점에서 편찬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原田種成 등의 학자는 中宗朝 編纂說(684-710)의 입장에 있다. 이는 관련 기록에 의거한 주장이라기보다 당시의 정치 상황에 의존한 추정이다. 貞觀之治의 출현 배경을 잘 알고 있는 吳兢이 中宗의 복위를 기뻐하며 황실의 중흥을 꾀하기 위하여 『貞觀政要』를 편찬하여 중종에게 올렸다는 관점¹³⁾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貞觀政要』의 편찬 시기는 중종이 복위한 705년에서 睿宗이 즉위한 710년 사이로 비정된다.

반면, 彭忠德¹⁴⁾은 玄宗朝(713-741)의 어느 시점일 것이라는 관점으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許強¹⁵⁾과 謝保成 등의 학자는 玄宗朝 編纂說(713-741)을 지지하지만, 시점을 좁혀 開元 17년(729)에 완성되었다 주장하였다. 이는 吳兢이 작성한 『貞觀政要』의 서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한 추정에서 비롯되었다. 즉, 吳兢이 존경하였던 源乾曜(미상-731)와 張嘉貞(666-729)의 侍中과 中書令이라는 관직과 벼슬 및 『舊唐書』와 『新唐書』에 『貞觀政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玄宗 17년(729)에 『貞觀政要』 10권을 編定하여 呈上¹⁶⁾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李萬生은 吳兢이 修文館學士를 역임한 시점과 서문에 등장하는 源乾曜와 張嘉貞 두 사람이 벼슬을 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開元 9년(721) 9월에서 開元 10년(722) 10월 사이라는 의견¹⁷⁾을 펼쳤다. 그는 謝保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대되는 논거를 제시하고, 謝保成보다 편찬 시기를 조금 앞당겨 놓은 셈이다. 이와 더불어 현종의 집권 후반기에 해당하는 天寶(742-756) 연간에 완성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는 당시 吳兢이 올린 상소문을 토대로 추론한 것¹⁸⁾으로, 근거가 부족하여 큰 신뢰성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2.3 편찬 체제 및 내용

2.3.1 편찬 체제

『貞觀政要』의 본문 編制는 모두 10권 40편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편성 순서는 판본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권두에 상표문과 서문, 책의 목차가 할당되어 있고 권1의 내용이 이어진다. 후대 중간본의 경우 重刊序文과 題文 등이 개별 판본에 따라 가감되어 있음은 으레 짐작되는 사실이다. 반면, 권말에는 여러 판본을 두루 조사해 보더라도, 발문 등 간행 관련 사실이 첨부된 판본은

13) 原田種成 著, 『貞觀政要(上)』(東京: 明治書院, 1983), 4.

14) 彭忠德, “吳兢及其『貞觀政要』略論,” 『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7年 02期, 5.

15) 許強, “談吳兢『貞觀政要』的編撰特色,” 『圖書館學刊』 2006年 03期, 123.

16) 謝保成, “試解『貞觀政要』成書之謎,” 『史學月刊』 1993年 01期, 34.

17) 李萬生, “關於『貞觀政要』的成書時間問題,” 『貴州師範大學學報』 1993年 02期, 1-16.

18) 駢宇騫·齊立洁·李欣 注釋, 『貞觀政要』(北京: 中華書局, 2009), 2-3.

확인되지 않고, 권10의 본문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본문의 편성 체제에 직결되는 수록된 내용은 唐太宗 李世民(599-649)이 그의 창업 당시 측근이자 왕조의 요직에 있던 재상들, 이를테면 魏徵(580-643), 房玄齡(578-648), 杜如晦(585-630) 등과 治國 전반에 관하여 나눈 얘기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실제 본문을 서술하는 방식은 吳兢이 당대종과 동시대에 활동한 史官이 아니었으므로, 40편에 달하는 편별 소주제에 따라 기존 역사서의 기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례를 거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10권에 달하는 본문의 상당 부분이 재상들과 문답하는 형식과 사건이나 일화를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吳兢은 이 시기 사료에 수록된 上疏文, 詔文, 上表, 上書, 策文, 諍諫文 등의 기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上疏文이나 詔文 등을 직접 제시한 것 외에도, 태종의 일화에서 典例와 故事를 다수 인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편성 방식으로 말미암아 『貞觀政要』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다른 역사서들에 비해 오히려 깊이가 있고, 그보다 후대에 저술된 『舊唐書』나 『新唐書』, 『唐會要』 등과 비교할 때도 보다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¹⁹⁾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본문의 편찬 체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貞觀政要』의 편성 방식에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사건의 시대순 배열에 의존한 연대기적 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당시 吳兢이 편찬에 관여한 역사서들, 이를테면 『梁史』, 『周史』, 『隋史』, 『唐書』 및 각종 실록들이 대부분 역사 기술의 관점에서는 기전체 또는 편년체에 충실한 자료들이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3.2 수록 내용

『貞觀政要』에 수록된 40편의 본문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재상들과의 나눈 이야기와 태종과 관련된 일화, 즉 貞觀 연간의 故事들이 주제별로 편성되어 있다. 편별 세부 수록 내용으로 권1에서는 군주가 갖추어야 할 도리와 정치의 근본에 관하여 논하였다. 권2에서는 관리의 임명과 간언의 중요성, 권3에는 군주와 신하가 거울삼아야 할 계율에 대하여 다루었다. 권4에서는 태자와 왕들의 경계 삼을 내용, 권5는 儒家에서 중시하는 忠과 孝, 仁과 信 등의 덕목을 논하였다. 권6에서는 절약과 사치, 겸양 등을 논하고 있고, 권7에서는 문학과 역사, 권8에서는 농업과 형법, 부역, 세금 등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권10에서는 군주의 행실을 강조하면서 본문을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편별 내용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論君」, 「論政」, 「論求諫」 등의 소제목 붙여두었다. 본문에 수록된 편별 내용은 앞선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만, 수록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재차 짚고 넘어갈 점은, 吳兢이 기록한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貞觀政要』에서 직접 그 서명을 언급하고 있는 인용 문헌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수록 내용 가운데 고구려와 신라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사도 다소간 전제되어 있다.

19) 許強, “談吳兢『貞觀政要』的編撰特色,” 『圖書館學刊』 2006年 03期, 124.

예컨대 『貞觀政要』 권8의 「論貢獻」 제4장에 따르면, 貞觀 18년(644)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시도한 사실과 고구려 莫離支 淵蓋蘇文과의 자세한 일화²⁰⁾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正史 기록인 『三國史記』²¹⁾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실제 이듬 해(645) 5월에는 唐太宗이 군사 3만을 보내어 고구려와 전투²²⁾를 벌이기도 하는 등 고구려와 唐은 그 뒤 요동성과 안시성 등지에서 수년간 투쟁²³⁾을 이어가기도 하였다. 특히, 『貞觀政要』의 본문에서는 貞觀 19년(645) 이후 지속된 고구려와의 투쟁 관련 내용²⁴⁾은 10여 차례 이상 언급되고 있는 반면, 신라와는 우호적인 기사들이 확인²⁵⁾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7세기 중엽 당시의 시대 정황²⁶⁾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여겨지기도 한다.

3. 『貞觀政要』 판본의 유통과 활용

3.1 중국의 간행 및 유통

3.1.1 판본의 유통 및 간행

8세기 초경에 완성된 『貞觀政要』는 초창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刊本 또는 寫本의 형태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료나 기록에 전하는 판본에 대한 유통 기록은 10세기에 처음 나타난다.

즉, 전존하는 판본은 남아 있지 않으나, 10세기 초 後唐에 이르러 國子監에서 『貞觀政要』를 간행하였던 정황과 이를 다시 宋代에 婺州의 지방 관청 산하의 公庫에서 판각하였던 사실을 밝힌 기록이 전한다. 宋나라 紹興 연간에 주로 활동한 중앙 관료이자 학자였던 汪應辰(1118-1176)의 『文定集』²⁷⁾에 따르면, 자신이 紹興 32년(1162)에 『貞觀政要』를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婺州의 公庫에서 판각한 판으로, 그 출처는 後唐 天成 2년(927) 國子監版을 재차 새긴 것이라 하였다. 이는 기록상 927년에 國子監에서 판을 새긴 것과 南宋의 紹興 연간 지방 관아에서도 『貞觀政要』가 새롭게 간행되었던 사실을 밝힌 셈이다.

또한 乾隆 연간의 기록이긴 하지만 『天祿琳琅書目』에 의하면, 乾隆 9년(1744) 황실의 昭仁殿에는 12-13세기 金代의 간본으로 여겨지는 『貞觀政要』가 소장²⁸⁾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20) 『貞觀政要』 제8권 「論貢獻」. “貞觀十八年太宗將伐高[句]麗其莫離支遣使貢白金黃門侍郎 …”

21) 『三國史記』 卷第49 「列傳」 第9 <蓋蘇文條>.

22)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十四年夏五月條.

23) 『三國史記』 卷第21 高句麗本紀 第9, 寶藏王 四年條.

24) 『貞觀政要』 제5권 「論忠義」. “貞觀十九年太宗功遼東安市城高[句]麗人衆皆死戰詔令高延壽惠眞等降衆 …”

25) 『貞觀政要』 제9권 「議征伐」. “… 今無此三條坐煩中國內爲舊主雪怨外爲新羅報仇 …”

26) 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上』(서울: 지영사, 1998), 481.

27) 文淵閣 四庫全書本 『文定集』 卷10 第1張 「題跋」의 「跋貞觀政要」. “… 此書婺州公庫所刻板也 … 出其五世所藏之本乃後唐天成二年(927)國子監板也 …”

판본의 유통 정황으로 南宋의 장서가이자 목록학자인 陳振孫(1183-1261)이 작성한 『直齋書錄解題』를 참고할 수 있다. 陳振孫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활동하던 13세기 중엽에는 『貞觀政要』가 유통되었고, 이 판본은 吳兢이 찬하여 8세기 초 神龍 연간에 황제에게 올린 판본²⁹⁾이라 적시해 두었다.

이와 더불어 선후를 가리기 어려우나 宋代 간본의 유통 기록은 宋나라 말기에 활동한 학자이자 장서수집가였던 晁公武(1105-1180)의 『郡齋讀書志』에도 나타난다. 이 목록에서는 晁公武 자신이 소장한 도서에 대하여 서명과 간단한 해제³⁰⁾를 달고 있다. 晁公武는 목록이 작성될 紹興 11년(1151)에 1,500여 종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貞觀政要』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이상의 내용에서 아쉬운 바는 당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이 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현시점에서 汪應辰이나 陳振孫, 晁公武 등이 소장하거나 목견한 판본이 宋代에 간행한 것인지, 그보다 앞선 시기의 전래본인지는 명확히 판가름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남송 말기의 학자 王應麟(1223-1296) 『玉海』에도 『貞觀政要』의 유통에 대한 정황 및 기록³¹⁾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이러한 정황은 11-13세기 正史書인 『遼史』, 『金史』 및 『元史』에서도 빈번히 등장³²⁾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이후 元代 말기 元統 1년(1333)³³⁾에 이르러서는 戈直에 의해서 『貞觀政要』의 본문에 註釋과 集論이 가해진 판본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전존본들로 미루어 판단컨대, 이 때(1333)를 기점으로 후속 간본들이 속속 간행되는 등 판본 유통이 빈번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3.1.2 현존 판본

앞선 절에서는 2차 자료인 書目이나 史料에서 宋代나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전래되었던 판본의 간행 가능성 및 유통 정황을 검토해 보았다. 이어서는 元代 이후 간행된 각 판본의 전존 상황을 『貞觀政要』 판본에 수록된 序跋의 기록이나 실물 자료로 남아있는 傳存本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2.1 元刊本

(1) 至順 4년(1333) 戈直 集論本

이 판본은 흔히 ‘戈直本’ 또는 ‘戈直 初刊本’, ‘戈直 集論本’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물 자료는 전하

28) 中華書局(1995년) 影印本 『天祿琳琅書目』 卷5 『金版史部』. “貞觀政要一函六冊 / 唐吳兢撰十卷前金唐公弼序 兢上貞觀政要表 / 龜公武郡 …”

29) 文淵閣 四庫全書本 『直齋書錄解題』 卷5 『典故類』. “貞觀政要十卷唐吳兢撰前題衛尉少卿 … 神龍中所進當攷”

30) 江蘇古籍出版社(1988년) 影印本 『郡齋讀書志』 卷6 『雜事類』. “貞觀政要十卷右唐吳兢撰以唐之 …”

31) 文淵閣 四庫全書本 『玉海』 卷49 『藝文』 『政要寶訓類』 외 다수.

32) 周峰, “『貞觀政要』在遼, 西夏, 金, 元四朝,” 『北方文物』 2009年 01期, 2-5.

33) 판본에서는 ‘至順四年(1333)’으로 새겨짐.

지 않는다. 元代 이 판본의 유통 정황은 官府 장서 목록인 『天祿琳琅書目』 後篇 권9와 藏書家 陸心源(1834-1894) 소장서 목록인 『皕宋樓藏書志』 권24에서 확인이 된다. 다만, 자료가 전하지 않아 이들이 소장하였던 판본이 戈直이 주석을 단 初刊本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 ‘戈直 初刊本’의 간행 또는 유통 사실에 관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成化 刻本(1465)’의 권두에 수록된 吳澄(1249-1333)과 郭思貞의 서문이 그것이다. 서문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至順 4년(1333)에 해당하는 元統 1년(1333)에 戈直이 諸儒의 論說을 추가하고, 考訂 音釋하여 세상에 널리 간행³⁴⁾하였던 사실을 밝혀 두었다. 주석을 단 戈直의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서문에 ‘庶士’라고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고관대작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대해서는 14세기 초 원나라 말기에 활동한 사학 평론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3.1.2.2 明刊本

(1) 洪武 3년(1370) 王氏 勤有堂 刻本

이 판본은 현존하는 판본 중 간기를 밝힌 이른 시기의 판본 중 하나이다. 판의 형식의 四周雙邊에 半匡의 크기는 19.3cm×12.7cm로 세로로 긴 판형에 13행 24자의 촘촘한 글자 배치가 특징적이다. 판심의 제목은 ‘政要’로 새겼고, 판심의 아래와 위쪽에 細黑口가 있으며 魚尾는 아래위가 마주보는 黑魚尾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판본은 간행 관련 기록으로 책의 본문이 시작되는 권1의 내용에 앞서 한 면에 걸쳐 ‘洪武庚戌仲冬 / 王氏勤有堂刊’이라는 牌記를 새겨두었다. 즉, 홍무 3년(1370)에 개인 집안에서 사사로이 새겨진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판이 새겨진 王氏勤有堂은 潤州 사람 王敬仁 집안의 齋室로, 이 牌記가 새겨진 다른 인본으로는 『朱文公校昌黎先生集』과 『魁本對相四言雜事』 등도 알려지고 있다. 이 판본은 본문에 細字의 주석이 없어 앞서 至順 4년(1333)에 간행된 戈直의 集論本과는 무관하고, 40편의 편별 본문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책의 간행 시기나 판의 형식면에서도 宋版이나 元版의 번각 또는 중간본으로 여겨진다. 전존 판본은 10권 4책의 편철로 中國國家圖書館에 소장³⁵⁾되어 있다.

(2) 洪武 23년(1390) 范氏 遵正堂 刻本

이 판본은 홍무 3년(1370) 勤有堂本과 더불어 전형적인 私家 또는 書房에서 새겨진 판본이다. 판본의 권두에 밝힌 范氏遵正堂은 명나라 洪武 연간의 인물이었던 范姓의 書房 명칭³⁶⁾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판은 四周雙邊의 변란이나 판의 양식 이를테면, 광곽의 크기, 13행 24자의 행자수와 魚尾의

34) 成化 元年(1465) 內府 刻本 『貞觀政要』 『序文』. “… 則貞觀政要之書何可無也庶士戈直考訂音釋附 / 以諸儒論說又吳開廣將來 …”

35) 中國國家圖書館 藏書(03835).

36) 向輝, “關於『貞觀政要』明刊本的考釋與疑問,” 『文津流觴』 2009年 03期, 47.

형태, 관심 제목 등 외형적인 면에서는 勤有堂本과 거의 흡사하지만, 勤有堂本의 번각판은 아니다. 이는 본문의 글자에서 略字와 正字 표기, 異體字와 行款에서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 판본의 두드러진 차이는 권두에 새겨진 牌記의 내용으로, 이 판에서는 ‘洪武庚午仲冬 / 范氏遵正堂刊’으로 판각하였다. 이로 미루어 勤有堂本(1370)과 遵正堂本(1390)은 다분히 앞선 시기³⁷⁾의 동일 저본으로 각각의 인쇄 공간에서 새롭게 새긴 중간본으로 여겨진다. 현존 판본은 江蘇省常熟圖書館에 5권 2책의 영본³⁸⁾이 남아 있다.

(3) 成化 원년(1465) 內府 刻本

이 판본은 앞서 두 종의 판이 사가판의 성격인데 반해, 중앙 기구에서 간행한 관판본의 성격이 고스란히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판본의 외형에서 그대로 드러나 새긴 판형이 크고, 글자의 크기와 판각이 아주 정제되어 있다. 또한 전존 판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량이 여러 기관³⁹⁾에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의 여러 기관⁴⁰⁾에도 같은 판본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 판을 흔히 ‘成化 刊本’ 또는 ‘成化 元年本’이라 일컫는 것은 권두에 새긴 憲宗(재위 1464-1487)의 서문에 이어, 그 서문의 작성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成化元年八月初一日’이라 판각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 판의 형태 및 편성 체제상의 큰 특징은 大黑口를 선명하게 새긴 점, 大字 기준 12행 20자의 큰 字形으로 새긴 점, 본문의 사이사이에 戈直의 주석을 雙行을 새긴 점, 앞선 홍무 연간에 간행된 판에도 수록된 吳澄과 郭思貞의 題文 외에도 卷頭의 가장 앞부분에 명나라 憲宗(재위 1464-1487)의 서문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戈直이 편찬한 『序文』과 『集論諸儒姓氏』는 至順 4년(1333)에 간행된 初刊本の 체제를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至順 4년(1333) 戈直이 集註한 初刊本이 전하지 않는 시점에서 그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앞선 홍무 연간의 두 판과 달리 戈直의 주석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을해자본과 목판본 등 수 차례 간행된 한국 유통본의 底本이 되었다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판은 일본으로 유전되어서 다수의 번각 및 重刊版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4) 成化 9년(1473) 內府 刻本 修補本

이 판은 國立故宮博物院에 소장된 판⁴¹⁾으로 內府 刻本의 일부 판을 修補한 판이다. 『國立故宮博物院善本舊籍總目』에 따르면, 성화 9년(1473)에 內府 刻本을 보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체 판을 새롭게 새긴 번각이나 중간이 아니므로, 內府 刻本과 같은 계열로 여겨진다.

37) 宋版 또는 元版의 여부는 명확히 판가름하기 어렵다.

38) 常熟圖書館 藏書(01445).

39) 吉林大學圖書館 藏書(善0135), 安徽省圖書館 藏書(2:7213), 中國國家圖書館 藏書(06752) 등 14개 기관 이상의 소장처가 확인됨.

40)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C4483100), 東洋文庫(貴 XI-6-A-13) 등.

41) 國立故宮博物院 藏書(故殿016096-016100).

(5) 成化 12년(1476) 崇府 刻本

이 판은 앞선 成化 元年版 內府 刻本이 중앙 관서의 판본이라면 藩府 刻本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면 지방 관서의 각본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崇府는 명나라 초기부터 존치되었던 여러 藩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藩府는 명나라의 300여 년간 명나라 황제의 자손들이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다스리던 통치 장소를 일컫는 용어로 藩王府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藩王府 또는 藩府에서 찍은 판본은 ‘藩府本’이라⁴²⁾ 명명되기도 한다. 이 중 崇府는 명나라의 4대 황제였던 英宗 朱祁鎮(재위 1457-1465)의 6번째 아들이었던 崇簡王 朱見澤의 藩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藩府가 설치된 곳은 山東, 河南, 山西, 四川, 江西 등 다양하였다.

이 판본의 전반적인 특징은 얼핏 보아서는 內府 刻本과 매우 흡사한 관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일한 저본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부 각본의 번각이 아닌 전체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새긴 중간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체제와 내용 등 편성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본문 전체를 새롭게 판각하였고, 이는 판심의 大黑口 너비와 魚尾의 모양 등에서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권두의 권1 본문 시작에 앞서 한 면에 걸쳐 ‘成化丙申崇府重刊’이라는 牌記를 크게 새겨서, 명나라 憲宗 7년(1476)에 새롭게 중간한 사실을 밝혀 두기도 하였다.

이 판본의 소장처는 四川大學圖書館⁴³⁾, 浙江大學圖書館⁴⁴⁾, 中國國家圖書館⁴⁵⁾, 上海圖書館⁴⁶⁾ 등 9개 기관의 대학 및 박물관 등으로 확인된다.

(6) 간기 미상본

이 밖에도 명나라 때 판각된 것으로 여겨지는 인본 중에 간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판본⁴⁷⁾과 정확한 판각 시기는 알 수 없으나, 明代에 새겨진 것으로 여겨지는 內府 刻本의 번각본⁴⁸⁾ 여러 종이 전하기도 한다.

3.1.2.3 清刊本

清代에 이르러서도 『貞觀政要』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간행된 판본은 일부 私刻本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成化 元年本 즉 戈直 註釋本의 번각 또는 중간본에 해당한다. 진존본은 康熙 18년(1679) 본⁴⁹⁾, 康熙 연간에 판각된 것으로 여겨지는 간기 미상의 大里閣本⁵⁰⁾, 嘉慶 3년(1798) 南沙의 掃葉山

42) 陳清慧, “明代藩府刻書輯考,” 『中國典籍與文化』 2010年 第2期, 1.

43) 四川大學圖書館 藏書(01507).

44) 浙江大學圖書館 藏書(2/192).

45) 中國國家圖書館 藏書(204.242-02125).

46) 上海圖書館 藏書(T382923-32).

47) 中國國家圖書館 藏書(07398), 上海圖書館 藏書(線善807358-65) 등.

48) 國立故宮博物院 藏書(故殿016092-016095, 故善006324-006333), 中國科學院國家科學圖書館 藏書(220.4/241) 등.

房 重刻本⁵¹⁾, 嘉慶 23년(1818) 목관본⁵²⁾, 光緒 4년(1878) 판본⁵³⁾, 간기 미상본⁵⁴⁾ 등 여러 판본이 중국의 각 소장처에서 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貞觀政要』는 중국의 역대 서적 중에서도 다른 史書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간행 빈도를 보인다. 이는 다른 역사서에 비하여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고, 역대 여러 왕들이 唐太宗의 통치 방식을 귀감으로 삼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간행 정황은 18세기 말 완성된 『文淵閣四庫全書本』을 보더라도 여실히 나타난다. 文淵閣本에는 편찬 당시의 서문을 비롯하여, 각 왕조별로 간행하면서 첨부한 여러 편의 序文과 題文 등이 권두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淸代의 『貞觀政要』는 사고전서본의 완성 이후에도 간본으로 몇 차례 더 판각되기도 하였다.

3.2 국내 수용 및 유통 양상

3.2.1 국내 수용 및 판본의 유통

3.2.1.1 관찬 사료에 수록된 판본의 유통 기록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양국 간 활발한 서적 교류의 정황이 나타난다. 특히, 7세기 이후 唐과의 서적 교류는 유교와 불교, 도교 및 역사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⁵⁵⁾되었고, 『貞觀政要』가 편찬되고 간행되었던 8세기 이후에도 사신들을 통한 서적의 유통⁵⁶⁾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貞觀政要』 또한 책이 편찬되고 연이어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그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판본의 유입 시기는 통일신라 중기에 해당하는 8세기 말이나 9세기 초경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10세기 광종 1년(950) 1월에는 이미 왕실에서 고려 국왕 光宗이 『貞觀政要』를 애독하였던 기록⁵⁷⁾이 보이기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10세기를 기점으로 판본에 대한 주석이나 유통 기록이 빈출한다. 예컨대, 10세기 말 崔承老는 『貞觀政要』의 사례를 들어 임금 成宗(在位 982-997)에게 上書⁵⁸⁾하였고, 德宗 2년(1016) 12월에는 왕실의 문무관들이 『貞觀政要』의 내용을 인용하여 禮品을 정하기도⁵⁹⁾ 하였다.

49) 上海圖書館 藏書(線善 798725-34), 南京圖書館 藏書(GJ-11097) 등.

50) 中國國家圖書館 藏書(74118).

51) 天津圖書館 藏書(P-12526), 青島市圖書館(512.44/2644) 및 中國國家圖書館 藏書(69011) 등.

52) 上海圖書館 藏書(線普長 303976-81).

53) 中國國家圖書館 藏書(72026).

54) 吉林省圖書館 藏書(善/345).

55) 宋日基, “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2013. 3), 19.

56)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 卷第9 孝成王 2년(戊寅) 四月條 의.

玉泳晷,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서지학연구』 제61집(2015. 3), 10-16.

57) 『高麗史』 권2 『世家』 권제2 光宗 元年(950) 1月 庚戌條.

58) 『高麗史』 권93 『列傳』 권제6 『諸臣』 崔承老.

59) 『高麗史』 권84 『志』 권제38 『刑法』 避馬式條.

이후로도 經筵의 진강 시 『貞觀政要』를 강론한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한편, 주목할 만한 사실로 12세기 초 睿宗 11년(1116) 12월에 金緣과 朴景仁 등 寶文閣 學士들이 왕명에 따라 『貞觀政要』를 주해⁶⁰)를 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석 작업의 참여자 중에는 金仁存(-1127)이 포함되어있던 정황⁶¹)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이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인 인종 1년(1123)에도 한 차례 주석 작업이 더 가해졌다. 이는 관찬 사료의 기록은 아닐지라도 비교적 앞선 시기의 『貞觀政要』 판본의 유통 사례로 의미가 있다. 즉, 인종 1년(1123) 임금이 왕명으로 寶文閣 直提學이었던 尹誦(1063-1154)에게 『貞觀政要』를 주석하도록 명⁶²)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주석본은 현재 실물 자료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임금의 명으로 특정 판본에 대한 주석 작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흔치 않으므로, 이러한 기록은 고려 시대 왕실에서 유통된 『貞觀政要』의 비중을 재차 부각시켜주는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 시대의 기록 중 건국 초기에 태조가 禮曹議郎 鄭渾과 校書少監 張志道에게 『貞觀政要』를 교정해서 올리도록⁶³) 하였던 내용이 있다. 판본을 교정하여 올린다는 것은 중앙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전제되므로, 12세기 고려 睿宗朝의 주해본 및 仁宗朝 註解本과 더불어 국내 간행의 한 계통으로 여겨진다. 인본이 남아 있다면 '1395년 校書館本'으로 지칭될 수 있는 이 책은 판본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목판 또는 금속활자의 版種 여부는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세조 조에 기틀을 완성한 『經國大典』에 따르면, 인재 등용 시험 중 譯科 初試의 경우, 특히 蒙古學에서는 『貞觀政要』 등의 교재에서 문장을 옮겨 쓰도록 정하고⁶⁴) 있다. 이는 譯科의 인원 선발 시 講書를 규정한 조항에서 蒙學의 글쓰기는 『御史箴』이나 『孔夫子』, 『貞觀政要』 등에서 베껴 쓰도록 정한 것⁶⁵)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이 밖에도 『高麗史』에는 『貞觀政要』를 통한 講讀官 등의 진강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조선 시대에도 『貞觀政要』를 교재로 한 80여 차례 가까운 임금 및 세자와 신하들의 經筵이나 進講 및 夜對, 侍講 기록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세조 원년(1455) 2월부터 진행된 을해자본의 주석 및 간행과 관련된 기록⁶⁶)과 무신자 초쇄본⁶⁷) 및 무신자 再刷本의 간행 관련 기록⁶⁸) 등 다수의 내용⁶⁹)이 전한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 중 상당수는 『國朝寶鑑』 등 다른 관찬 사료에 중복 기재되었음은 再言의 여지가 없다.

60) 『高麗史』 권14 『世家』 권제14 예종 11년(1116) 12월 甲申條.

61) 『高麗史』 권96 『列傳』 권제9 『諸臣』 金仁存.

62) 毅宗 8年(1154) 刻 『尹誦墓誌銘』. “... 宋宣和四年壬寅也明年(1123)仁宗命公注貞觀政要以進屬丙午春大內火公抗身衛...”

63)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1395) 乙亥 9월 4일 乙未.

64) 『經國大典』 권3 『禮典』 ‘取才’條.

65) 『經國大典』 권3 『禮典』 <諸科> ‘譯科初試’條.

66) 『世祖實錄』 권1 세조 1년(1455) 윤6월 12일 丙辰 외.

67) 『承政院日記』 肅宗 2년(1675) 11월 13일 辛卯 외.

68)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4) 12월 4일 乙丑 외.

69) 조선 시대 『實錄』이나 『承政院日記』, 『內閣日曆』 등 관찬 사료에 수록된 『貞觀政要』의 간행 사실이나 유통 사례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3.2.1.2 책판 목록 및 서책 목록에 수록된 판본

책판 목록은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책판에 대한 소장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의 책판에 대한 기록 즉, 책판 목록에 수록된 내용은 판본의 간행이나 유통 사실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간행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역이나 특정 장소에 책판을 보관하였다는 기록은 곧 이를 판각하여 인출에 활용하였다는 정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책판 목록에 수록된 『貞觀政要』 책판의 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책판 목록에 수록된 『貞觀政要』

목록명 (판종)	목록 刊寫 시기	판명(서명)	지역명	비고
攷事撮要(乙亥字本)	1568	貞觀政要	全州	·
攷事撮要(乙亥字本)	1576	上[貞]觀政要	全州	· '上'은 '貞'의 誤植
攷事撮要(木板本)	[1576년경]	貞觀政要	全州	·
攷事撮要(木板本)	1585	貞觀政要	全州	·
攷事撮要(筆寫本)	1585	貞觀政要	全州	·

이처럼 임란 전 『貞觀政要』의 간행 사례는 版種 여부를 알 수 없는 태조 4년(1395) 교서관본과 세조 1년(1455) 을해자본을 제외하면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이 유일하다. 이는 판본의 내용이나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도서의 수요와 책을 읽는 주된 독자층, 그리고 수록된 내용 상 군주와 제왕의 통치 선범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쉽게 간행될 수 없었거나 간행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존 판본의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임란 전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은 실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판본 확인이 어렵다. 다만, 현전하는 인본의 간행 현황이나 계통으로 미루어 15세기 중앙에서 간행된 을해자 주석본이 100여년 이상 흘러 全州에서 재차 번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선조 9년(1576) 을해자본 『攷事撮要』에 수록된 『上觀政要』의 板名은 비슷한 시기 간행된 목판본 『攷事撮要』에서는 '貞觀政要'로 기록되어 있다. 비단 『貞觀政要』의 서명뿐 아니라 을해자본 『攷事撮要』의 오자나 탈자가 목판본으로 간행되면서 수정 또는 교정된 사례가 몇몇 더 눈에 띄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부연할 사항은 『貞觀政要』를 판각한 16세기 후반 전주 지역의 출판 상황이다. 즉, 선조 9년(1576) 을해자본 책판 목록과 선조 18년(1585) 목판본 책판 목록에 수록된 책판의 종수가 9년의 시간차를 두고 두 배 가까이 증가되어 특기할 만하다.

그 밖에 책판 목록보다 직접적인 판본의 유통 및 간행의 정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서책 목록이 있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조선시대 서책 목록의 경우 수록된 판본의 간행 시기나 版種을 명시한 사례가 드물어 문헌의 간행 시기와 관련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책 목록은 목록 작성 당시의 판본 유통 사례를 보여주는 2차 자료로 보다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서책 목록에 수록된 판본의 간행 시기는 그 하한선이 목록의 작성 시점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판본의 간행 시기 판정에 유용한 도구가 되는 셈이다. 현전하는 여러 서책 목록에 수록된 『貞觀政要』 판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서책 목록에 수록된 『貞觀政要』

서책 목록(작성연도)	서명	보관처	내용	비고
海東文獻總錄(1637.11)	貞觀政要註解	[경상도 일대]	高麗睿宗觀貞觀政要…	·
西序書目籤錄[1792년]	貞觀政要	奎章閣 西庫	三部各六本 唐吳兢	乙庫史部
西序書目草本[1795년경]	貞觀政要	西庫	三部各六本 唐吳兢撰	東洋文庫本
西序書目草本[1795년경]	貞觀政要	西庫	三部各六本 唐吳兢撰	狩野文庫本
寶文閣冊目錄[1801년경]	貞觀政要	德壽宮 寶文閣	六卷 唐吳兢撰	雜史
西庫藏書錄[1865-1866]	貞觀政要	西庫	三件 各六冊	雜聚類
西庫書目(1868)	貞觀政要	西庫	三件 各六卷 唐吳兢撰	雜史
閣古觀書目(1868)	貞觀政要 貞觀政要 貞觀政要	奎章閣 閣古觀	二卷 不帙破傷 四卷 一套 六卷	四架 七架 十六架
西庫書目(1876)	貞觀政要	西庫	六卷 改衣	二十九架
奎章閣樓上庫冊目錄 [光武年間]	貞觀政要 貞觀政要	奎章閣 樓上庫	四卷 六卷	北六櫥 北七櫥
大畜觀書目[고종연간]	貞觀政要	창덕궁 大畜觀	六冊	·
西序書目草本(1912)	貞觀政要	규장각 西庫	三部各六本 唐吳兢撰	淺見文庫本
淸芬室書目(1944)	貞觀政要註解	李麟榮 소장	殘本 1卷 1冊 / 世祖 初年 乙亥字 刊本…	·
古鮮冊譜(1944.04)	貞觀政要 貞觀政要註 貞觀政要註解	前間恭作 조사 또는 본인소장	華本 飜印… 5종 高麗睿宗朝本… 1종 世祖乙亥字本… 2종 외	·

한편, 17세기 중엽 金佺(1597-1638)의 조사에 따르면, 고려 睿宗朝 金緣 등이 주해한 간본이 경상도 일대에 남아 있었음을 밝혀 두었다.

또한 20세기 중반 李麟榮 장서에도 을해자 간본이 영본 1책으로 남아 있었으며, 卷次는 7이라고 명기하여 당시까지만 해도 을해자 주석본 권7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古鮮冊譜』의 목록에 따르면, 前間恭作은 당시의 조사 내용 또는 본인이 소장하였던 판본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고려 예종조 주해본의 존재를 재차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 주석본의 실물 자료 유전 가능성 및 판본의 제목이 『貞觀政要註』로 새겨졌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2.1.3 문집 및 기타 자료에 수록된 판본의 유통 기록

고려와 조선 시대를 막론하고 『貞觀政要』의 주된 독자층은 임금을 비롯한 중앙의 관료들이었고,

문헌이 간행되고 유통된 장소 또한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실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판본이 과거시험의 講書 또는 筆寫 교재로 지정되는 등 지방의 유사들도 이 책을 접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조선 전기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는 등 책의 수요와 간행이 맞물려 이루어졌고, 지역 文士들도 점차 판본을 접하거나 강독할 기회가 잦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李齊賢(1287-1367)의 문집에 따르면, 崔承老가 『貞觀政要』의 통치 사례를 빗대어 임금에게 간하였던 일화를 상세하게 기록⁷⁰⁾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 世宗朝에 활동하였던 梁誠之(1415-1482)도 국내 역사서를 비롯한 『貞觀政要』와 『大學衍義』 등을 끊임없이 강독⁷¹⁾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東文選』 등의 선집에 재차 轉載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중기 尹鑄(1617-1680) 선생은 그의 나이 60세 되던 숙종 2년(1676) 9월에 임금으로부터 직접 『貞觀政要』 1질을 내려받기도⁷²⁾ 하였다. 그리고 朴世采(1631-1695)의 『南溪集』에 수록된 『答道峯院儒』에 따르면, 숙종 21년(1695)에 한양 인근의 도봉 서원에 판본이 비치되어 있었고, 이를 자신이 빌려 읽었던 정황⁷³⁾을 밝혀 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개인이나 문사들은 자신의 문집에도 『貞觀政要』의 일부를 포함시켜 그 내용을 거듭 되새겼으며, 이러한 기록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집⁷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무신자 활자본의 유통 정황에 대한 기록으로 19세기 필사본으로 여겨지는 『大事編年』 권14의 『貞觀政要』조에 따르면, 임금이 『貞觀政要』를 承政院에 내려서 校書館으로 하여금 활자로 간행하여 올리도록 한 기록⁷⁵⁾을 밝혀두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영조 42년(1766) 필사된 『淳昌郡邑誌』에서도 고려시대에 활동한 지역 출신의 문사 金仁存(-1127)을 설명하면서 『時政策要』와 『貞觀政要』를 찬하였다⁷⁶⁾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료의 기록을 구전 수준에서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金仁存의 찬술이 아닌 당시 임금이었던 睿宗의 명에 따른 『貞觀政要』의 주석 작업에 동원된 정황을 밝힌 내용이다.

그 밖에 形止案이나 임금의 독서 기록 또는 『進講錄』 등 기타 자료에 수록된 『貞觀政要』의 판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70) 숙종 24년(1698) 刊 『益齋亂藁』 권제9 下 『史贊』. “… 行選官御事崔承老上書成王曰臣竊見開元史臣吳兢撰進貞觀政要欲勸玄宗勤修太宗之政蓋以事體相近…”

71) 정조 15년(1791) 刊 『訥齋集』 권4 『奏議』. “… 三寶鑑以次講讀至於貞觀政要大學衍義等書常常觀覽不勝幸甚…”

72) 간년미상 목판본 『白湖先生文集附錄』 『年譜』. “… 更出江外九月宣賜貞觀政要一帙再疏…”

73) 영조 8년(1732) 刊 『南溪先生文集』 『南溪先生朴文純公續集』 권제20, 『書』의 『答道峯院儒』. “… 書冊錄亦領其中貞觀政要東臯集二冊後便借送爲…”

74) 영조 49년(1773) 刊 『蒼霞先生文集』 권제6, 순조 32년(1832) 作 『愚谷遺稿』 권제2의 『表』 등.

75) 필사본 『大事編年』 권14 『貞觀政要』. “上下貞觀政要一褒于政院仍教曰太宗之從諫弗拂聞過必改善始克終可觀於此予未嘗不再三眷眷也令校書館以活字刊進”

76) 영조 42년(1766) 寫 『淳昌郡邑誌』 제9장 『人物篇』 제8행-제9행. “金仁存文貞公上琦子三重大臣功臣… 纂論語新義剛定陰陽地理諸書又撰時政策要貞觀政要…”

<표 3> 「讀書錄」 등 기타 자료에 수록된 『貞觀政要』

서책 목록(작성연도)	서명	보관처	내용	비고
曝曬形止案(1591)	貞觀政要	全州史庫	貞觀政要 二件 十四冊	玄字橫
史庫曝曬形止案(1594)	貞觀政要	海州史庫	貞觀政要 七冊	天字橫
列聖進講冊目錄(1763)	貞觀政要	중양 왕실	甲寅十二月二十日 …	·
御製讀書錄(1767)	貞觀政要	중양 왕실	甲寅講李名臣奏議 …	木板本
進講冊子次第(1775)	貞觀政要	중양 왕실	重講	·
洪氏讀書錄(1810)	貞觀政要 十卷	洪奭周 私家	唐吳兢之所作也 …	筆寫本

이상의 자료에 따르면, 임란 전 판본의 유통 사례로 全州와 海州 史庫에 각각 『貞觀政要』 2질과 1질이 소장되어 있었다. 다만, 상기 판본이 乙亥字本 또는 임란 전 간행된 全州 木板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 활자본이 6책 편철이었던 것에 비해 소장 판본은 7책 편철본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영조 43년(1767) 간행된 목판본 『御製讀書錄』에 의하면, 영조 甲寅인 즉위 10년(1734)차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왕실의 진강 자료로 활용된 사례를 기록한 내용도 밝혀 두었다. 특히, 『御製讀書錄』보다 4년 앞서 영조 39년(1763) 필사된 「진강목록」 등의 사본이 「독서록」 간행의 기초 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洪奭周(1774-1842)가 읽은 『貞觀政要』는 그가 규장각의 抄啓文臣과 奎章閣 直提學으로 왕실에 머물던 순조 9년(1810) 이전의 내용으로 여겨진다.

그 외 『貞觀政要』 판본의 다양한 유통 및 활용 사례로 조선 후기 왕실의 필사 자료인 『列聖誌狀通紀』나 『經筵故事書進錄』 및 『侍講錄』 등의 자료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3.2.2 판본의 활용

『貞觀政要』는 중국에서 책이 編刊된 8세기 중엽 이후 『通鑑節要』 등 관찬 사료와 역사서에 그 내용이 꾸준히 인용되고 회자되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판단컨대 판본은 중국의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인 9세기 경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고, 그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 및 간행되었다.

판본이 유입된 초창기에는 다른 史書와 마찬가지로 한동안 그 간행은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임금의 명으로 수차례 주석 작업이 가해지는 등 중앙에서 주로 애독되며 유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책판 목록이나 서책 목록 및 개인의 문집 기록으로 볼 때, 지방 및 사가에서도 판본이 유통되고 읽혀졌던 정황을 살필 수 있다.

결국 앞서 살펴본 판본의 간행 및 유통 사례로 미루어 『貞觀政要』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貞觀政要』는 일찍이 『大學衍義』와 더불어 제왕학의 고전이자 교과서로 왕실에서 끊임없

이 강독되었다. 이와 같은 講讀官을 통한 『貞觀政要』의 진강 기록은 10세기 고려시대 기록부터 조선 후기까지 관찬 사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나라의 위기나 재앙이 있을 때 이를 물리치고자 임금이 더욱 『貞觀政要』를 열독하였다는 기록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조선시대 왕실의 經筵이나 夜對 또는 侍講院의 강의 교재로 활용되었던 사례는 관찬 사료로 『實錄』이나 『承政院日記』 등은 물론 『講筵說話』 및 『列聖進講冊目錄』의 왕실에서 제작된 각종 문헌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둘째, 조선 전기 『經國大典』에 의하면, 『貞觀政要』는 과거시험 시 譯科 初試의 蒙學 인원 선발 교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험의 대상이 관본의 講書와 寫字라는 제한된 범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기까지 중앙에서만 간행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全州 등 지역 관각으로 확대되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셋째, 『貞觀政要』에 기록된 사건 기술이나 역사적 사실의 서술 방식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주석이 일부 가해졌다 하더라도, 기본 틀은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였던 吳兢의 원저술에서 큰 변함이 없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서술 방식은 우리나라의 역사서나 사료 편찬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예로 正祖는 자신의 『日得錄』에서 재위 7년(1783) 각신들에게 직접 아뢰기를, 각신 주도의 사료 정리 및 『奎章閣志』 『御製條』 등의 編次 시에도 『貞觀政要』의 편찬 선례를 따라서 즉위 이래의 사실을 끝이곧대로 적어 완성하도록 지시⁷⁷⁾하고 있다. 그리고 待教 李崑秀(1762-1788)는 정조의 『日得聖語錄』 편찬 시 임금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도⁷⁸⁾ 하였다. 더불어 임금인 正祖 자신 또한 『日得錄』을 편찬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貞觀政要』의 편성 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日得錄』의 편찬 시 규장각 직제학 鄭志儉 등은 임금의 사소한 언행까지도 모두 기록해 두어 證正하되, 『貞觀政要』와 『朱子語類』의 체례를 본떠서 편집하도록⁷⁹⁾ 하였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여 『日得錄』을 완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18세기 중엽 安鼎福(1712-1791)이 저술한 『臨官政要』⁸⁰⁾ 또한 관료와 위정자들의 행동 규범을 정한 경제치용의 실학 저술 중 하나이다. 저자 안정복은 이 저술에서 서문을 비롯한 편별 구분을 『論政章』, 『處事章』 등의 소제목 붙여 42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본문의 기술은 『漢書』, 『書經』, 『論語』, 『春秋傳』, 『管子』 등 중국 고전의 문장과 일화를 인용하여 핵심 내용을 가려 뽑았다. 즉, 『貞觀政要』의 내용 기술 방식과 본문의 구성 및 체제를 모두 동일하게 답습하여 찬술한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77) 『弘齋全書』 제166권 『日得錄』 <政事>. “... 閣臣等嘗以閣志御製條稟定上曰... 鈔出事爲之關係治體者每月每日之下據實直書如貞觀政要太平要覽之例另出凡例稟成全書若官職黜陟...”

78) 18세기 말 刊 『壽齋遺稿』 권5 『日得聖語錄』의 <癸卯錄 - 丁未錄>.

79) 『弘齋全書』 제182권 『群書標記』 <日得錄>. “... 至歲終各出所記互相證正參攷貞觀政要朱子語類之例藏之本閣歲以爲常爲宜予許之此日得錄之所由作也自是時原任閣臣各記所得...”

80) 영조 33년(1757) 安鼎福 撰 『臨官政要』.

넷째, 판본은 임금의 독서 및 소양 자료로 『御製讀書錄』 등에 꾸준히 기재되었던 정황뿐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명망 있는 선비들의 애독서 또는 필독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구체적인 정황은 지역 서원에 소장되었던 『貞觀政要』의 판본 기록이나 선비들의 『讀書錄』에 서명이 자주 등장하는 것, 그리고 지역 문사들의 문집에 『貞觀政要』의 본문 내용을 인용한 사례가 빈출하는 것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4. 전존 판본

이 장에서는 전존하는 판본의 서지적 특징 및 간행 관련 기록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 가운데는 판본의 간행 기록만 있을 뿐 실물 자료는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인본의 서지는 확인되거나 실사가 어려운 자료도 포함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물 자료와 간행 기록을 더불어 살펴보는 것은 『貞觀政要』 판본의 전체 간행 현황과 계통을 파악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1 고려시대 판본

4.1.1 예종 11년(1116) 竇文閣學士 註釋本

이 판본에 대한 기록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高麗史』 「世家」의睿宗 시기에 나타난다. 즉, 예종 11년(1116) 12월의 기록에 따르면, ‘遂命金緣朴景仁及竇文閣學士註解政要以進’이라 하여 왕명으로 보문각 학사들이 참여하여 주해본을 간행한 사실을 밝혀 두었다. 주해 작업에 참여한 학사 중에 金仁存도 동참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만, 이 주석본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판본의 실물 자료에 대하여 17세기 초반 金然(1597-1638)와 20세기 前間恭作(1868-1942)이 전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海東文獻總錄』의 기록과 『古鮮冊譜』의 내용은 판본의 간기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高麗史』의 기록을 언급하는 정도로 그쳤다. 즉, 12-13세기 간행 고려 판본에 대한 추정 근거를 제시한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이 시기 간행본의 전존 가능성은 제기되었지만,睿宗朝 각본의 간기 표기나 그 형식이 어떠하였는지는 실물 자료의 발굴 및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4.1.2 仁宗 1년(1123) 尹誦 註釋本

이 판본에 대한 기록 또한 앞서 약술한 바와 같이 11-12세기 翰林院과 竇文閣에서 문신으로 주로 활동하였던 尹誦(1063-1154)의 墓誌銘에 나타난다. 묘지명의 내용⁸¹⁾에 따르면, 당시 임금이었

던 仁宗이 직접 尹誦에게 명을 내려 판본을 주석토록 하였다.

다만, 이 판본이 주석되기 7년 전(1117)에 睿宗의 명으로 한차례 주석이 이루어졌던 것을 재차 주석하여 간행한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앞서 예종의 命으로 주석본이 간행되었던 예종 11년(1117)에 尹誦는 禮部員外郎으로 중앙 관료로 머물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예종조 주석본의 간행 업무에 尹誦 또한 金仁存 등과 함께 주석 작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尹誦 墓誌銘』의 기록을 충실히 따른다는 관점에서, 仁宗朝에도 재차 주석본이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위 ‘尹誦 註釋本’은 앞선 예종조본과 또 다른 계통의 판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나, 아쉬운 점은 실물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1.3 誠庵本 (I), (II)

이 두 판의 형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만, 두 자료 중 권7의 내용이 중복되어 실사가 가능하다면 중복판의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있겠으나, 자료 접근이 어려워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의 서지 사항으로 판단하면, 두 판본은 판심제와 책의 크기가 같고, 半廓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판일 가능성도 일부 드러난다.

하지만 誠庵本 (I)은 계선을 새겼고, 후자인 誠庵本 (II)는 無界本이므로 동일판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두 판본이 12세기 초에 중앙에서 간행된 주석본일 가능성과 또는 지방의 관청에서 새긴 판본일 수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誠庵本 (I)	誠庵本 (II)
貞觀政要 권5-7/吳兢(唐)撰, 木板本 (混入補刻)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高麗年間]刊 線裝3권 1책 : 四周單邊, 半廓 : 21.0×15.3cm, 有界, 8행 15자, 上下中黑口, 上下內向或下向黑魚尾 ; 30.0×18.8cm 版心題 : 政要 注記 : 原版高麗時代刻 補版朝鮮前期刻	貞觀政要 권7-10 / 吳兢(唐)撰, 木板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高麗年間]刊 線裝4권 1책 : 四周單邊, 半廓 : 22.0×14.7cm, 無界, 8행 16자, 下向黑魚尾 ; 30.0×18.8cm 版心題 : 政要

4.1.4 개인 소장본 (김재갑 소장본)

이 밖에도 2010년 한국고서협회의 『한국고서특별전』⁸²⁾에 따르면, 개인 소장본으로 권8-9의 1책 영본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 판본의 형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판 또한 실물 자료를 확인하기는

81) 毅宗 8年(1154) 刻 『尹誦墓誌銘』. “… 宋宣和四年壬寅也明年(1123)仁宗命公注貞觀政要以進屬丙午春大內火公抗身衛…”

82) 한국고서협회 편, 『한국고서특별전』 (대구: 同협회, 2010), 29.

어렵다. 다만, 앞의 誠庵本과는 광곽의 크기가 3cm 이상 차이가 나서 동일판으로 보기 어렵고, 간행 시기도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貞觀政要 권8-9 영본 1책 / 吳兢 撰[12세기]추정, 木板本
[未詳] : [未詳], [고려 12세기경].
線裝 2권 1책 : 四周單邊, 광곽 : 22.3×18.4cm, 無界, 8행 15-17자,
上下下向黑魚尾 ; 31.8×19.4cm, 紙質 : 도침된 고려 종이

4.1.5 고려대 晚松文庫本

고려 시대 간행된 판본 중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자료는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귀중본으로 소장된 이 판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목록에 따르면, 판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貞觀政要 / 吳兢(唐) 撰, 木板本(高麗板, 권1-6, 권8)
[未詳] : [刊寫者未詳], [高麗時代(918-1392)]
零本 7卷 3冊[全10卷5冊] : 四周單邊 半郭 21.5 ×15.7 cm, 無界, 8行14-17字,
間黑口, 下向黑魚尾 ; 30.5 ×20.1 cm
版心題 : 政要

이상과 같이 晚松文庫本『貞觀政要』는 권1-2의 1책, 권3-4의 1책, 권5-6과 권8이 합쳐진 1책으로 낙질의 7권 3책이 남아 있다. 각 권마다 앞부분의 본문 내용이 한 장에서 많게는 5장까지 결락되어 있고, 제3책의 경우처럼 卷次가 연속되지 않는 것은 후대에 다시 제본한 결과이다. 그리고 한 행의 글자 수도 14자에서 많게는 17자까지 드러나 있다. 이 高麗版의 간행 관련 기록은 권수 또는 권10의 말미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락되어 알 수 없다.

결국, 고려시대 6종의 판본에 대한 기록 및 서지 사항으로 볼 때, 行字數와 판심의 제목 및 광곽의 크기나 魚尾 형태상으로는 계선을 새기지 않은 誠庵本(Ⅱ)와 고려대 만송문고본의 판형이 닮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판본에 대한 동일 판종의 확정 여부는 성암본(Ⅱ)에 대한 자료 접근이 어려워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상의 高麗本이 당시 왕명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주석을 첨가한 판본인지 또는 중국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이나 중각하였는지의 여부도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만송문고본의 경우 제1권이 끝나는 권말제에 이어 ‘貞觀政要 卷第一 五千三百六十八字’와 같이 전체 본문의 글자 수를 적어둔 것으로 미루어, 중국본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물론, 형태적인 면에서는 글자의 새겨진 서체를 비롯하여 계선이 없이, 행자수의 드러남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분히 우리나라에서 판하본을 다시 써서 중간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점은, 고려시대 판본 중 현존 자료 4종

모두는 가로 행의 글자 배치가 7-8행으로 적고, 세로 字數가 많은 전형적인 12-13세기 고려 판본의 형태로 새겨졌던 사실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4.2 조선시대 판본

4.2.1 목판본

4.2.1.1 [태조 4년(1395) 校書館本]

이 판의 실물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판의 간행 근거는 실록 기사에 나온 태조 4년(1395)의 내용이다. 즉, 1395년 9월 4일에는 ‘乙未命禮曹議郎鄭渾及校書少監張志道 校正貞觀政要以進’이라는 기록이 있다. 임금인 태조가 禮曹議郎 鄭渾과 校書少監 張志道에게 명하여 『貞觀政要』를 교정하여 올리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실제 판본의 간행으로 이어졌는지는 국초의 실록 기사가 소략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시 정황상 조선 건국 초기부터 經筵과 書筵에서 『貞觀政要』를 바치게 하였던 것과 더불어 책을 講論하였던 사실⁸³⁾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고려시대에도 왕명으로 누차 판본의 간행이 이루어졌던 점 등으로 미루어 교서관에서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로 추정된다. 결국 고려시대에도 『貞觀政要』는 왕명으로 몇 차례 간행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판본은 국초 중앙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2.1.2 [(16세기 이전 刊) 전주 목판본]

이 목판본의 실물 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은 임란 전 출판된 『攷事撮要』 5종에 모두 全州 간본으로 수록된 기록이 있어서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판의 간행 정황으로는 1455년 중앙에서 을해자로 간행된 『貞觀政要』 활자본이 10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판본이 희구하여 왕실의 뿌리를 가진 全州에서 재차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실물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정황상 版下本을 다시 써서 간행하였거나 을해자본의 번각본일 가능성 등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당시에는 중국에서 출판된 1465년 內府刻本도 유통되었을 것이므로, 이 판이 들어와 전주에서 다시 판각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83) 『太祖實錄』 권2 태조 1년 12월 16일 壬戌條. “... 豈肯開經筵進明儒於左右獻貞觀政要而朝夕納誨乎豈肯設書筵集多士於東宮 ...”

4.2.2 활자본

4.2.2.1 을해자본 [1455년 世祖 命刊本]

이 연구의 대상 판본이기도 한 이 판은 세조 1년(1455) 임금이 직접 판의 考定에 참여하여⁸⁴⁾ 간행한 금속활자본이다. 하지만 같은 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임금이 다른 업무로 바빠 간역 주관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河東府院君 鄭麟趾(1396-1478)에게 미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으로 찍은 인본의 소장처는 국내 기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영본 1책이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 소장된 판본(古貴0237-4)의 서지 사항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貞觀政要註解 第5卷 / 裴孝源 編 ; [戈]直 註解
 金屬活字本(乙亥字)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卷(卷第5) 1册(零本) ; 32.5 x 19.8 cm

이 판은 간행 경위는 刊役의 업무 초기 세조 자신이 직접 판의 考定에 참여하였으나, 일단락 짓지 못하고 얼마 뒤 왕이 여러 사무가 번다하여 겨를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鄭麟趾에게 간역 업무를 일임하였고, 연이어 왕명으로 집현전 校理인 洪應(1428-1492)과 韓繼禧(1423-1482)에게 註를 붙여서 올리도록 지시⁸⁵⁾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임금에 의하여 간역이 도모되었으나, 그 매듭은 중앙의 臣僚들이 간행 업무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왕명으로 간행된 乙亥字 주해 판본은 전존하는 목록에 의하면, 1991년 일본의 內閣文庫에 10권 4책이 소장되었던 사실이 확인⁸⁶⁾된다. 이 판본은 당시 조사된 목록 상 저자 사항을 崔恒(1409-1474) 등이 편찬하였다 기록하고 있으므로, 세조 초에 간행된 을해자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장처의 문제 또는 조사 때의 누락 여부는 명확치 않으나, 1998년 한국서지학회의 자세한 보고⁸⁷⁾에서는 이 판본이 누락되어, 현재 전존본에 대한 구체적인 서지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謝保成의 연구⁸⁸⁾에서는 을해자본으로 여겨지는 ‘韓版 註解本’이 일본의 내각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고에는 현재까지도 을해자로 찍은 『貞觀政要註解』가 누락된 卷次없이 10권 4책의 완질본이 남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내각문고 소장본에 대한 자세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84) 『世祖實錄』 권1 세조 1년 윤6월 12일 丙辰條. “傳曰貞觀政要註解及功臣戒鑑文宗實錄修撰予嘗掌之若政要予當攷定戒鑑實錄今方多事未暇披閱可令河東府院君主之 …”

85) 『世祖實錄』 권1 세조 1년 윤6월 19일 癸亥條. “上召集賢殿校理洪應韓繼禧等謂曰予嘗受上王命註貞觀政要 … 然庶務甚繁不暇及也爾等其畢註以進”

8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日本所在韓國典籍目錄』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1), 394.

87) 한국서지학회 편,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 日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韓國本 目錄』 (서울: 同학회, 1998).

88) 謝保成 集校, 『貞觀政要集校』 (北京: 中華書局, 2003), 54.

4.2.2.2 무신자 초쇄본 [1675년 肅宗 命刊本]

이 판은 숙종 1년(1675) 12월 임금인 숙종이 왕명을 내려 교서관에서 활자로 찍도록 한 판본이다. 당시 임금이 承政院에 『貞觀政要』 한 질을 직접 내려주었고, 그 판본에 따라 교서관의 활자로 인쇄하여 올리도록 명⁸⁹⁾하고 있다. 왕의 하명 이후 이 판본이 간행된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다. 다만, 이듬 해(1676) 기록에 따르면, 鄭昌燾(1623-1687) 등의 臣僚들에게 판본이 반사되었던 정황은 확인⁹⁰⁾되고 있다.

판의 간행과 관련하여 당시 왕명에 의해 간행의 지시가 하달된 1675년 12월은 顯宗實錄字나 韓構字가 鑄成되기 이전의 시점이므로, 활자로 인쇄된 이 판본은 1668년 주성된 四鑄甲寅字인 戊申字로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자로 간행되었다면 무신자 초기 인본에 해당될 이 판본 또한 당시 간기를 밝힌 판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당시 肅宗이 승정원에 내려준 판본이 乙亥字本이었는지 또는 목판본이었는지는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 때 간행된 판본이 숙종 下賜本의 형식과 체제를 답습하였는지 또는 내용을 단순히 참고하여 새롭게 조판하였는지의 여부 또한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中 1817)과 경북대학교 翠菴文庫 소장본,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B7-A127 v.1-v.6) 등 일부 무신자로 찍은 인본이 이 시기 숙종의 명으로 간행된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기 판본들은 글자의 마모가 다소 진행되었고, 판의 형식 또한 18세기 인본에서 나타나는 무신자 후기본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 정도를 언급하며, 1675년 간행된 판으로 단정 짓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2.3 戊申字 再刷本 [1734년 英祖 命刊本]

이 판본은 영조 10년(1734) 12월 임금의 명에 따라 교서관에서 간행하여 올린 판본⁹¹⁾이다. 실록 기사에 따르면 임금인 영조가 친히 서문을 지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시기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의하면, 이 판의 간행 경위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즉, 임금이 李宗城(1692-1752)과의 논의를 살펴보면, 영조는 이 해(1734) 4월부터 이미 『貞觀政要』와 『歷代君鑑』 등의 서적을 간행할 의중⁹²⁾을 비쳤다. 같은 해(1734) 6월에도 임금은 『貞觀政要』와 『明臣奏議』 등 진강용 책자가 일실되고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고, 『左傳』의 인출이 끝난 뒤 인출할 의도⁹³⁾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얼마 뒤 7월에는

89)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12월 18일 辛未. “貞觀政要一秩于政院仍教曰太宗之從諫弗聞過必改善始克終可觀於此予未嘗不再三拳拳也令校書館以活字刊進”

90) 『承政院日記』 숙종 2년 11월 13일 辛卯. “... 臣頃得頒賜貞觀政要而見之三代以後好諫者 ...”

91) 『英祖實錄』 권39 영조 10년 12월 25일 丙寅. “... 上曰今觀貞觀政要皇明憲宗御製序文既弁其首矣予欲作後序以表興成之意仍親製序文命芸閣刊進”

92)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4월 15일 庚申. “... 上曰何書可乎貞觀政要如何而欲刊印則其工役又幾何也 ...”

召對시 『明臣奏議』 진강이 끝난 뒤 『貞觀政要』를 繼講하여야 하는 탓에 芸閣으로 하여금 인출을 서두를 것을 명⁹⁴⁾하기도 하였다. 연이어 『左傳』의 인출이 시작되고 진강용 외에 반사건의 인출이 진행될 즈음, 『貞觀政要』는 『左傳』에 비해 권수가 적으므로 진강용과 더불어 반사건도 함께 인출하는 논의⁹⁵⁾도 있었다.

하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貞觀政要』의 인출은 그 해(1734) 11월까지도 완료되지 못하였고⁹⁶⁾, 실록의 기사처럼 1734년 12월 25일에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해(1734) 12월 20일을 즈음하여 앞선 『貞觀政要』 판들의 서문을 검토하고, 판본의 상황과 교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⁹⁷⁾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 때도 목판으로 새긴 중국본의 憲宗 서문과 영조가 친히 지은 後序 등의 판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임금 영조가 직접 중국본 서문의 서체와 自序의 글자 크기 등에 대하여 친히 지정해 주기도⁹⁸⁾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1734년 12월 간행이 일단락된 간본은 본문은 무신자로 찍혔으며, 서문과 영조의 후서는 목판으로 새겨져 인출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貞觀政要』 판본 중 무신자 활자의 본문에 서문과 어제후서가 목판 또는 활자로 인출된 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규장각에 전하는 『貞觀政要』 판본과 연세대학교에는 임진자 본문에 영조의 서문이 목판으로 인출되어 첨부된 판본은 몇몇 종 남아 있다.

4.2.2.4 壬辰字本 [1772년 이후]

이 판본의 실물자료는 여러 군데 소장되어 있으나, 관찬 사료 등에서 판본의 인출이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장서각 소장본 자료에는 이 판의 정식 간행에 앞서 이 판을 간행하기 위한 교정본으로 사용된 판본이 남아 있기도⁹⁹⁾ 하다. 교정이 이루어져 정식으로 간행된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여러 질이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실물 자료의 인출 시기는 으레 임진자가 주성된 1772년 영조 말년 이후가 될 것이며, 정조 연간에 임진자로

93)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6월 26일 庚午. “…而前在者則太半闕失之致也上曰今見詩傳大文…即今所印出者與此冊無異而其字樣則必勝於此冊矣尙星曰左傳印出尙未訖工…”

94)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7월 1일 甲戌. “…上曰今見領事獻議則既無異議召對時名臣奏議進講後當以貞觀政要繼講貞觀政要斯速印出事分付芸閣…”

95)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7월 4일 丁丑. “…至於貞觀政要則其卷數比左傳頗少使之竝印頒賜件恐未爲不可矣上曰 儒臣所達大體是矣卷數既不多則使之印出而…”

96)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11월 3일 甲戌. “…貞觀政要所印則未知何如耶俄以賞字有所…”

97)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12월 20일 辛酉. “…上曰此貞觀政要異於他文先讀序文可也瑗讀皇明成化御製序又讀吳澄所作題辭…” 外.

98)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12월 25일 丙寅. “…上曰唐本貞觀政要皇明憲宗皇帝御製序文及予所製後序令藝閣入梓時皇朝序文則以唐本洪武正韻本字精刊予之序文比唐本字差少而奉使大臣還來後…”

99) 김소희, “조선 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 연구,” 『서지학연구』 제61집(2015. 3), 101-123.

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이 판에 대하여 관찬 사료에는 관련 기록이 전하지 않아 간행이나 인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간행 형식과 체제에 있어서는 영조의 집권 초기에 간행된 무신자 再刷本, 즉 1734년본을 그대로 답습하여 인출한 사실이 현존 판본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4.2.2.5 丁酉字本

규장각 등 해제 자료에 따르면, 규장각 소장본의 일부 자료를 丁酉字版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인본의 조사 결과 모두 임진자 판본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과 인본을 두루 조사하더라도, 丁酉字版 『貞觀政要』는 인출 기록은 물론, 실물 자료 또한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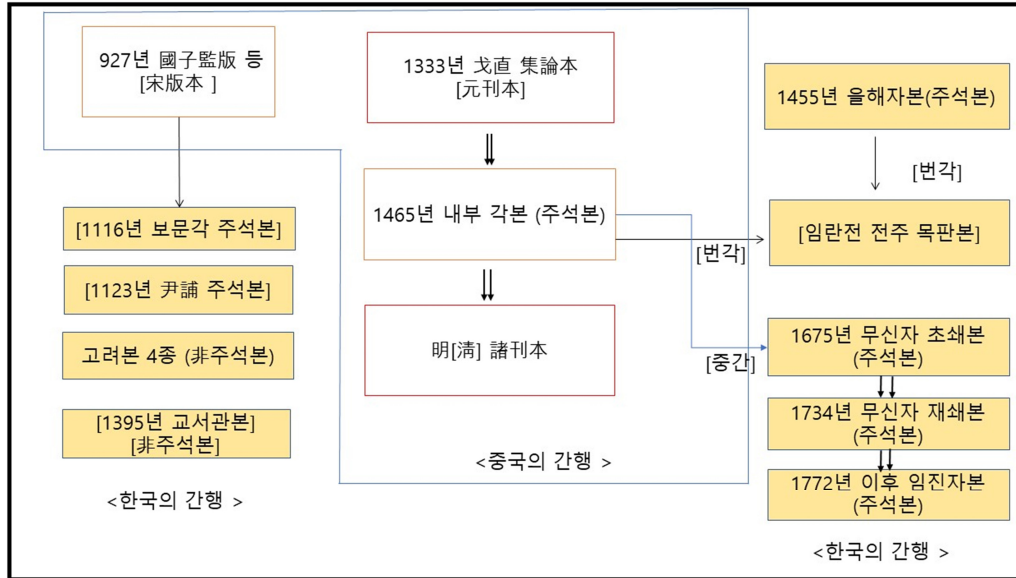
4.3 판본의 계통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貞觀政要』의 간행 추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중국의 경우 여러 기관의 소장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貞觀政要』 宋版本의 기관 소장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에 현존하는 誠庵本과 만송문고본, 김재갑 소장본 등 고려본 4종은 모두 영본으로 간기를 밝힌 판본이 없다.

다만, 국내 고려본 4종은 인본의 형태나 본문의 간행 방식 등으로 미루어 12세기-13세기 간본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러나 판본의 본문을 통해 명확히 판가름되는 사항은 4종 모두 주석이 생략된 吳兢이 찬술한 본문만 간행한 판이라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이 판들은 宋版本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본을 번각하였거나 그것을 토대로 다시 새긴 중국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전존본 4종은 12세기 초 왕실의 寶文閣 註釋本이나 尹誦(1063-1154)의 주석본과는 또 다른 계통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주석이 가해지지 않은 판본은 중국에서도 14세기 말까지 여러 종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전존 판본이 남아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초 1395년 校書館本까지는 註釋 없이 본문만을 간행한 판본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 세조조 을해자본이 간행된 1455년 이후 판본들은 모두 주석본으로 일관되게 간행된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1465년 內府刻本의 출판 이후 청대의 다양한 판본들은 모두 주석본으로 유통되기도 하였다.

전존 판본이 남아 있지 않아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가정하더라도, 상기의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貞觀政要』의 간행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파악된다.



<그림 1> 국내 간행 『貞觀政要』 계통도

판본 간행의 큰 흐름은 이상의 <그림 1>과 같이 요약되어, 고려시대 『貞觀政要』는 중국 송판의 번각본 또는 중각본과 더불어 고려 왕실의 독자적인 주석본이 주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1395년 교서관본까지도 非註釋本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1455년 을해자본의 출판을 계기로 元刊本(戈直 集論本) 형식의 주석본이 주로 유통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 무신자본과 임진자본 등은 모두 주석본인 內府刻本을 바탕으로 하여 간행된 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조선 초기 을해자로 간행된 판본과 조선 중기 무신자본 이후의 여러 판본은 모두 주석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중국의 元版本에서 이어진 內府刻本을 그대로 조판하여 인출하였던 사실을 지적해 둔다.

5.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의 가치

상기의 판본 계통도에서 1455년 刊 『貞觀政要註解』는 선뜻 그 간행의 출발이 되는 저본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전존하는 주석본으로는 가장 빠른 시기의 판본일 뿐 아니라, 그 시기 면에서도 중국 명나라 內府刻本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뜻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독자적인 주석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보다 앞서 고려 주석본과 元刊本으로 戈直의 集論本이 유통되었던 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장에서는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가 가지는 출판 문화사적인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5.1 자료적인 관점

먼저, 을해자판 『貞觀政要註解』 권5의 자료적인 가치로 이 판의 소장처는 권5의 零本 1권 1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본을 제외하고, 기관 소장본으로는 국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판본도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아서 앞부분의 제2장까지는 훼손되어 낙장이 발생되었다. 그 뒤 권말제까지는 더 이상 본문의 누락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형식 즉, 아래위로 마주보는 黑魚尾의 형태와 흑구가 없다는 점, 9행 17자의 기본틀에 註釋을 雙行으로 처리한 점, 판심제의 형태 등 여러 면에서 乙亥字版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또한 세조 원년의 편찬 사료에서 임금이 『貞觀政要』의 주석을 명한 것과 함께 참여한 사실 및 그 편찬 경위를 누차 기록하여 두었는데, 그 대상 자료가 인본으로 전하여 이와 같은 사료의 기록을 실물로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5.2 간행 계통의 측면

이 판은 전존하는 다른 판본들과 더불어 외형적으로는 실물로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주석본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도 왕명으로 주석이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있고, 중국에서도 이 乙亥字版의 간행에 앞서 元대에 戈直에 의하여 주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간행 계통의 측면에서 이 판의 출판에 영향을 끼친 판은 고려의 주석본일 가능성, 당시 유통된 元刊本人 戈直 集論本, 그리고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국초 간행된 1395년 校書館本의 3종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주석본은 실물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1395년 校書館本 또한 비주석본으로 중국 판본의 번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乙亥字版의 간행에는 元刊本人 戈直 集論本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戈直本 또한 실물 자료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모습은 1465년 刊 內府刻本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므로 內府刻本과 을해자본을 비교해보면 이 같은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乙亥字版은 후대의 『貞觀政要』 출판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임란 전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판본이 을해자판의 번각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 초기 왕실의 주석 작업을 토대로 그 이후 주석본 간행의 출발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5.3 사회 통치 관점

조선 시대를 아울러 왕의 經筵과 왕세자의 書筵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서적으로는 『大學衍義』와 『貞觀政要』가 손꼽힐 정도로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정황은 태조의 집권과 동시에 朝夕으로 『貞觀政要』를 읽게 하고, 날마다 강론을 병행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관련

기록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 신하들은 어김없이 『貞觀政要』의 통치 사례를 빗대어 왕에게 간언한 점¹⁰⁰⁾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중국에서도 왕실을 중심으로 많이 읽히던 판본이 우리나라에서도 통치와 국가 운영의 지침이 되는 주요 서적으로 계속 활용된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판본이 조선후기까지 왕실을 중심으로 활자나 목판으로 꾸준히 간행된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乙亥字版의 간행 이후 전주의 목판본만 한 차례 간행된 것으로 미루어, 을해자판은 조선 전기 왕실의 『貞觀政要』에 대한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명나라 內府刻本이 일부 유통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또한 전존하는 판본의 간행 정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乙亥字版은 17세기 중엽 戊申字版이 간행되기까지 2세기 이상 동안 왕실의 주요 교재로 활용되었고, 임금의 교육과 국가 통치서로 충분히 활용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5.4 내용 관점

전술한 바와 같이 을해자판 『貞觀政要註解』의 간행 당시 저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슷한 시기 간행된 1465년 內府刻本과도 본문에서 일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 내부각본이 戈直 集論本을 토대로 주석을 추가 또는 보완한 판본이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한편, 이러한 본문의 차이는 어느 판본이 정본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권5의 비교만으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10년의 차이를 두고 간행된 內府刻本과 본문 대조의 관점에서도 을해자본은 의미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을해자본의 주석은 당시 集賢殿 學士인 洪啓禧, 鄭麟趾 등이 우리의 방식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주석 부분을 제외한 본문의 차이를 밝히면, 다음의 <표 4>와 같이 정리된다.

<표 4> 1465년 刊 <內府刻本>과 본문 비교

(위치: 張, a-앞면, b-뒷면, 行)

연번	1455년 乙亥字本 권5(위치)	1465년 內府刻本 권5(위치)	비고
1	入 <u>嘆</u> 曰豈有(3-a-2)	入 <u>歎</u> 曰豈有(3-b-2)	유의자
2	殺傷 <u>我</u> 兵(3-a-7)	殺傷 <u>吾</u> 兵(3-b-5)	유의자
3	期以 <u>效</u> 命(3-a-8)	期之 <u>効</u> 命(3-b-6)	유사어
4	終當以 <u>死</u> 奉(3-b-5)	終當以 <u>此</u> 奉(3-b-9)	.
5	秦府 <u>官屬</u> 乃傳元吉(4-a-3)	秦府 <u>護軍尉尉遲敬德</u> 乃持元吉(4-a-3)	.
6	下馬 <u>啼</u> 哭(4-a-3)	下馬 <u>號</u> 泣(4-a-6)	.
7	授 <u>左</u> 翊衛郎將(4-a-5)	授 <u>右</u> 翊衛郎將(4-a-7)	.

100) 『中宗實錄』 65권 중종 24년 4월 3일 戊辰條, 『宣祖實錄』 196권 선조 39년 2월 12일 辛亥條 外.

연번	1455년 乙亥字本 권5(위치)	1465년 內府刻本 권5(위치)	비고
8	忠義之風(4-b-1)	忠節之風(5-a-3)	·
9	歎曰仁者(4-b-9)	歎曰忠烈之士仁者(5-a-9)	어구추가
10	臣昔受命(5-a-4)	臣等昔受命(5-b-9)	·
11	侍臣王珪曰(6-a-5)	王珪曰(6-b-3)	·
12	有武賁郎將獨孤(6-b-8)	有虎賁郎中獨孤(6-b-6)	·
13	聞京師陷乃(7-a-3)	聞京城陷乃(7-a-2)	·
14	克定之功(7-b-8)	克定大功(8-a-6)	·
15	[8-a-6] 3개 일화 누락	[8-b-7] 貞觀8,7,11년 일화 추가	내용삭제
16	方遇聖君停(9-a-5)	方遇聖明停(11-b-5)	·
17	可不勗勵(9-a-9)	敢不勗勵(11-b-8)	·
18	上謂侍臣曰(9-b-2)	太宗謂侍臣(12-a-1)	·
19	人而不可得(9-b-5)	人恐不可得(12-a-3)	·
20	子昔不事范中(10-a-2)	子昔事范中(12-a-6)	·
21	貞觀十三年太宗(10-a-9)	貞觀十二年太宗(12-b-8)	·
22	貞觀中太宗謂(11-a-1)	貞觀十二年太宗謂(13-b-2)	·
23	有子孫堪招(11-a-2)	有子弟堪招(13-b-3)	·
24	學士太宗攻遼東…(11-b-3)	學士(13-b-9) [8행 생략]	내용삭제
25	詔令高延壽惠眞降(11-b-5)	詔令縛薩延壽惠眞等降(14-b-7)	·
26	勸事君者(12-a-2)	勸勵事君者(15-a-2)	·
27	十五聞太妃(12-b-6)	十五在州聞太妃(16-a-8)	·
28	太宗嗟其至性(12-b-7)	太宗嘉其至性(16-b-1)	·
29	當代諸王(13-a-1)	內外如一當代諸王(16-b-4)	·
30	上曰(13-a-8)	太宗曰(17-a-2)	·
31	孝行亦古之(13-b-1)	孝行乃古之(17-a-3)	·
32	天下爲心(14-a-6)	天下爲公(18-a-1)	·
33	尙自相親(14-b-3)	尙且相親(18-a-7)	·
34	今不問其能(14-b-5)	今不論其能(18-a-8)	·
35	言其怨嗟(14-b-5)	言其嗟怨(18-a-8)	글자도치
36	舊兵共授(14-b-7)	舊兵并授(18-a-10)	유의자
37	上閣尙書(15-a-4)	上閣門出閣門後臨門校尉始覺尙書(18-b-10)	·
38	未爲得中(15-b-3)	未爲得理(19-a-5)	·
39	更欲撓法耶(15-b-5)	便欲撓法耶(19-a-6)	·
40	而欲殺之(16-a-9)	而許殺之(19-b-7)	·
41	見其人(16-b-6)	見此人(20-b-2)	·
42	亮嘗表廢廖(17-a-1)	嘗表廢廖(20-b-4)	·
43	實在於公平(17-b-4)	在於公平(20-b-10)	·
44	貞觀中將出(18-a-4)	貞觀六年將出(21-b-3)	·
45	願陛下思之(18-b-3)	實願陛下思之(21-b-9)	·
46	退而告后(18-b-4)	告后(21-b-9)	·
47	可謂正直社稷(18-b-6)	眞社稷(22-a-1)	·
48	其人也(19-b-3)	其人矣(22-b-10)	유의자
49	十一年特進魏徵(20-a-5)	十一年時屢有…魏徵(23-b-7)	4행 생략
50	白璧之徵(20-b-1)	白玉之徵(24-a-5)	유의자

연번	1455년 乙亥字本 권5(위치)	1465년 內府刻本 권5(위치)	비고
51	不足以妨大美也(20-b-5)	妨大美也(24-a-8)	·
52	謂之善善君子之小過(2-b-6)	謂之善善惡君子之小過(24-a-9)	글자추가
53	泣血者(20-b-8)	泣血者也(24-b-1)	·
54	善而不能進惡而(21-a-6)	善善而不能進惡惡而(24-b-3)	글자추가
55	志存汎愛引納多塗(21-a-8)	志存泛愛引納多塗(24-b-6)	유의자
56	上下相隔(21-b-8)	上下否隔(25-a-4)	·
57	何以求治夫以善相(21-b-9)	何以理乎且世…夫以善相(25-a-4)	17자 생략
58	同心爲朋黨(22-a-2)	同德爲朋黨(25-a-7)	·
59	不能辨正(22-a-5)	不能辯正(25-a-10)	유의자
60	近遠承風(22-a-5)	遠近承風(25-a-10)	글자도치
61	本行之而(22-a-8)	今之幸而(25-b-3)	·
62	既事失以傳(22-b-2)	既不可以傳(25-b-5)	·
63	妍媸宛然(22-b-5)	妍醜宛然(25-b-8)	·
64	弘遠爲人(22-b-9)	彌遠爲人(25-b-10)	·
65	君可不務乎(22-b-9)	君者可不務乎臣聞道德之…(25-b-10)	9張 생략
66	帝謂封德(23-a-6)	太宗謂封德(34-a-4)	·
67	人無信不立(24-a-2)	民無信不立(35-a-5)	·
68	則言而不行(24-a-4)	則言而不信(35-a-8)	異意字
69	故也其所由…昔貞觀(24-b-2)	故也昔貞觀(35-b-3)	11자 추가
70	謗之尤至於…正臣(25-a-2)	謗之尤正臣(35-b-9)	4행 추가
71	大矣故自天…昔齊(26-b-2)	大矣昔齊(36-b-6)	9자 추가
72	欲使腐於酒(26-b-4)	欲使酒腐於(36-b-6)	글자도치
73	絕其佞邪(27-b-7)	絕其私佞(37-b-2)	·
74	貞觀十七年(28-a-4)	太宗嘗謂…貞觀十七年(38-a-4)	13행 삭제

이상의 <표 4>에서는 단순히 두 판본 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는 각 판본 사이의 正誤 판정에는 元나라 때 새겨진 直直本과 더불어 그보다 앞선 여러 판본들을 두루 대조한 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正本이나 善本の 판별 또한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상기 <표 4>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두 판본이 본문의 차이로 미루어 판단하면, 주석을 제외하더라도 간행 시 저본이 동일 판본이 아니었다는 점은 틀림없다.

다만, 을해자판 본문의 비교 대상을 內府刻本으로 삼은 것은 간행 시기에 큰 차이가 없고, 내부각본 역시 중앙의 관료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내용이 온전하게 남아 있고, 교정이 정교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內府刻本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조선 후기까지 『貞觀政要』의 간행 시 저본이 되었던 것은 누차 언급되었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판본 간 드러나는 차이는 뜻이 비슷한 유의어를 대체한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반면, <표 4>의 4번이나 9번과 같이 글자의 생략은 물론 전혀 다른 글자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¹⁰¹⁾나 단어와 구절 또는 문장이 추가되는 차이가 일부 드러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01) ‘죽음으로 받들기를 마치다’와 ‘이로써 받들기를 마치다’는 뜻의 차이가 크다.

더불어 <표 4>의 15번과 같이 3개의 일화가 통째로 누락된 것 또한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근거와 발생 이유 또는 두 판본 중 어느 것이 옳은가의 판단 여부는 여러 판본의 비교 연구 이후 시점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5.5 인쇄문화사적 관점

『貞觀政要註解』 권5는 책 앞부분의 일부가 결락되기는 하였으나, 조선 세조 원년에鑄成된 동활자인 을해자로 인출되었다. 을해자는 조선 전기 활동한 문신이자 서화가였으며, 특히 글씨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姜希顔(1417-1464)의 서체를 본떠 만든 금속활자로 大字, 中字, 小字의 3종이 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조 7년(1461)에 한글 을해자도 함께 만들어진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貞觀政要註解』는 中字와 小字가 사용되어 인쇄되었고, 판심에는 상하 大黑口 없이 아래위로 마주보는 黑魚尾가 보이는 양식과 글자의 인출 상태로 미루어 을해자 초기 인본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글자의 배치는 9행의 행관에 中字와 小字는 모두 17자를 배치하였다. 다만, 小字는 中字와 글자의 아래 위 높이는 같으나 中字의 한 행에 두 글자를 雙行으로 배치한 특징이 있다.

을해자는 주성 후 2세기 가까운 오랜 기간 사용되어서 그 인본이 다수 남아 있다. 예컨대 각종 불경류를 비롯하여, 『高麗史』, 『實錄』, 『晉書』 등의 역사서와 『東文選』 등 문학서는 물론 각종 韻書, 醫書, 本草書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 인출에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이 을해자판 『貞觀政要註解』는 군왕의 통치 사례집으로 임금인 세조가 주석 작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이와 더불어 을해자의鑄成과 맞물려 우선순위로 인출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乙亥字의鑄成이 일단락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기록이 전하지 않고, 『貞觀政要註解』의 간행이나 인출 시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전존 판본의 상태만으로 인쇄된 시점을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사료의 기록은 물론, 註釋 시기가 세조가 집권한 元年이라는 점, 군왕의 도리를 다룬 문헌의 성격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을해자의鑄成과 동시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존 판본의 인쇄 상태도 이러한 정황에 부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기록이나 간행 정황 및 전존 판본의 상태로 미루어 『貞觀政要註解』는 梁誠之, 鄭麟趾 등이 주관하여 編修한 『文宗實錄』¹⁰²⁾ 등과 더불어 소위 을해자 주성과 동시에 찍을 初印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정은 무엇보다 世祖가 집권 원년인 1455년에 누차 그 편찬 과정을 점검한 기록에서 더욱 공고히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주석 및 편찬 작업이 일단락된 뒤 연이은 후속 조치로 책의 인출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세조 元年 刊 『貞觀政要註解』는 조선조 활자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통시적

102) 1455년 跋文本 실물 자료가 남아 있기도 하다.

흐름에서 乙亥字의 鑄成과 문헌 유통이라는 큰 틀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더불어 인쇄 기술사의 관점에서도 16세기 후반 輔鑄된 을해자본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책의 간행 과정에서도 임금이 손수 편찬에 관여하였음은 물론, 을해자가 1455년 鑄成되어 여러 문헌의 간행에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판 또한 을해자판의 가장 앞선 시기의 인출 문헌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 책 또한 1455년의 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을해자 간본과 더불어 초기 을해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자료로 출판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

5.6 주석 처리 방식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貞觀政要』는 크게 註釋本과 非註釋本으로 나뉘어진다.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석을 가한 주체는 元나라 戈直을 비롯하여 明代에도 몇 차례 당시 학자들이 별도의 주석을 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례도 고려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12세기 초부터 金緣과 朴景仁 등 寶文閣 학사들이 왕명에 따라 별도의 주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한편, 을해자판 『貞觀政要註解』 권5는 서명에서 드러나듯이 본문 사이사이에 주석을 小字로 달아 간행한 주석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조 때의 주석 작업은 기록 상 조선시대 들어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임은 물론이다.

다만, 이러한 『貞觀政要註解』 권5의 주석 위치와 그 내용을 內府刻本과 비교해보면, 단 한 곳도 같은 문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석을 단 문장의 위치는 간혹 동일한 곳이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상이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미 『實錄』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조 때의 주석 작업은 임금이 세조와 더불어 중앙의 학자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별도의 작업을 시행한 결과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당시 주석 처리 작업 시에는 앞선 판본을 두루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는 중국의 戈直本과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고려 주석본 정도가 준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高麗本과 戈直本은 실물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삼자간 상관 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의 처리 방식면에서는 중국의 內府刻本과 거의 흡사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곧 內府刻本의 저본으로 여겨지는 戈直本을 답습하여 주석을 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실제 방식 면에서는 글자의 성조 표시를 비롯하여, 단어의 부연 설명은 물론, 내용과 일화에 대한 추가 사례 등을 주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을해자판 『貞觀政要註解』 권5에 나타난 주석의 방식과 그 비중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전체 주석을 처리한 곳은 167개(100%)로 나타난다. 이 중 ‘難去聲’, ‘數上聲’ 등과 같이 단순 성조 표시를 짚막하게 밝힌 사례는 25회(15%)가 있고, 성조 표시와 함께 단어와 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가한 곳 26군데(16%) 드러난다.

또한 ‘太上謂高祖也’, ‘桃林地名在華山’ 등과 같이 문장에 포함된 인물이나 物名, 地名, 벼슬이나 관직 등 단어에 대한 간략한 부연 설명을 가한 곳이 57회(34%)에 이르고, ‘疇昔猶前日也’, ‘烈強正也’ 등과 같이 단어의 뜻풀이나 특정 글자를 쉽게 풀어쓴 사례 또한 32군데(19%)에 달한다. 그 밖에 ‘詩曰君子萬年永錫…’, ‘左傳語戢止也…’ 등과 같이 단어나 인용 문장의 출처를 밝히거나 인용서의 原文을 제시한 곳이 18개소(11%)에 이르고, 본문과 관련된 일화나 유사한 사례를 수록한 저술을 통한 부연 설명을 한 곳이 9군데(5%) 정도로 나타난다.

물론, 이와 같은 권5의 사례가 완질의 『貞觀政要註解』 판본에 드러나는 주석 경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판본의 전반적인 주석 방식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內府刻本에서는 단어 하나에 대한 간단한 주석으로 그친 사례도 乙亥字本에서는 그와 파생된 일화와 내용을 대폭 추가하여 주석을 가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는 곧 어느 판본의 주석 작업이 보다 자세하다거나 정밀하다는 관점보다 당시 학자들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乙亥字本の 주석 처리 방식이 가지는 의미는 비록 문장의 본 내용은 중국의 사례로 구성되었으나, 세조의 참여와 더불어 중앙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문장을 해석하고, 우리 학자의 의식에서 여러 例示를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乙亥字版의 주석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유통되던 『貞觀政要』 판본의 조선시대 최초의 주체적 해석 및 수용이라는 측면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주석의 내용면에서 개별 출처 및 주석 처리의 다양한 관점이나 세부 유형에 대하여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5.7 후속 판본에 끼친 영향

세조는 집권과 더불어 그 즉위년인 1455년 한 해에만 『貞觀政要』는 물론 『證道歌』, 『文宗實錄』, 『洪武正韻譯訓』 등 다양한 서적을 編修 또는 審定케 하였다. 이러한 다방면의 서적을 편찬하거나 찬수하게 된 배경에는 다분히 금속활자인 乙亥字의 鑄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와 같은 임금의 의도는 사신들로 하여금 중국에서 다량의 판본을 구득하도록 지시한 기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중 『貞觀政要』의 주해작업은 세조의 집권 초기 임금의 의지에 따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조는 이 『貞觀政要』의 주석 작업을 필두로 하여 연이은 후속 조치로, 『兵家三說』, 『孫子註解』, 『蠶書註解』, 『醫藥論』 등 각종 의서와 농서, 병서 등 여러 판본의 주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주석 작업은 임금의 지시와 더불어 崔恒과 申叔舟, 盧思愼 등 중앙의 大臣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1455년 刊 『貞觀政要註解』 판본을 직접 번각하거나 이를 중간판본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란 전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판본이 을해자본

의 번각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국초 간행된 1395년 목판본과 1455년 을해자본이 간행된 지 1세기 이상이 지나 판본이 희소하게 되자, 전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여 중앙으로 上送한 판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조선 전기 세조의 註解本이 왕실이나 중앙의 판본에 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무신자본이 간행된 17세기 후반까지 『貞觀政要』가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이후 숙종조인 17세기 후반 1675년을 기점으로 『貞觀政要』는 한결같이 註解本의 형태로 몇 차례 더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을해자본의 출판 이후 조선 후기 『貞觀政要』 판본이 모두 註解本 형태로 일관된 것도 중국 내부각본의 유통과는 별개로, 세조대의 주석 작업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당시 간행의 실무 면에서 內府刻本과 양자 간 선택의 문제는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현재까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실로 남게 되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즉, 조선 후기 주해본의 간행 시 새로 주석을 가하는 것은 시간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비효율적이었을 것이고, 앞서 유통된 세조대의 註解本과 중국 內府刻本이라는 선택지는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간행 저본의 선택지 결과가 乙亥字本이 아닌 內府刻本으로 삼았던 점은 좀 더 고구해 보아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다분히 실무적인 결정으로 을해자 판본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단순한 사실로 같음해 버리기에는, 국가적 규모의 물력이 동원된 출판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貞觀政要』의 편찬자, 편찬 동기 및 그 시기나 내용 등 판본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간행 정황 및 판본의 유통 사례를 관련 사료는 물론 전존하는 판본 조사를 통하여 간략히 개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판본 유입 및 국내 유통 양상 또한 소장 기관의 판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찬 사료 및 서목 등 2차 자료에 수록된 정황 등을 망라하여 관련 기록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개별 판본에 대한 조사로 간행 정황과 기록에 대한 검토 후, 판본의 전반적인 간행 계통까지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통된 여러 판본 중 특히, 전존하는 유일본으로 알려진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에 대하여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이 판본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貞觀政要』 판본 중 각별한 인쇄 문화사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판본이 가지는 특수성과 자료적인 가치는 물론, 간행 계통이나 수록 내용 및 기존 판본과 다른 주석의 방식 등 다양한 출판사적인 의미를 다루어 보았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는 비록 영본의 1책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적인 가치와 문헌이 지닌 의미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재차 인지하게 되었다. 이 판은 임금과 신하들의 협업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주석을 가한 사실과 더불어, 간행 이후 조선 전기 중앙의 『貞觀政要』 판본에 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하였던 것은 물론, 조선 후기 주석본의 간행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불어 조사자의 욕심이라면, 중국에서 元代 간행된 戈直 註解本과 12세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宋版本 『貞觀政要』의 출현이나 발굴에 대한 기대 또한 저버릴 수 없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현실적인 바람으로, 우리의 고려 주석본이나 1395년 校書館에서 간행된 목판본, 또는 임란 전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등장을 바라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이 판본들은 간행 정황과 판본에 대한 유통 기록이 사료에 명백히 드러나 있고, 특히 이 연구에서 논의된 몇몇 사실의 추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관련 분야 연구의 영향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더라도, 乙亥字 註解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원전]

- 『唐會要』 100卷 (臺灣商務印書館, 1983년 영인본)
- 『唐六典』 30卷 (臺灣商務印書館, 1983년 영인본)
- 『舊唐書』 225卷 (文淵閣四庫全書, 1983년 영인본)
- 『新唐書』 200卷 (文淵閣四庫全書, 1983년 영인본)
- 『玉海』 200卷 (文淵閣四庫全書, 1983년 영인본)
- 『資治通鑑』 294卷 (1921년 商務印書館 영인본)
- 『郡齋讀書志』 20卷 (1988년 江蘇古籍出版社 영인본)
- 『天祿琳琅書目』 10卷 (1995년 中華書局 영인본)
- 『直齋書錄解題』 22卷 (文淵閣四庫全書, 1985년 영인본)
- 『清芬室書目』 9卷 (1968년 寶蓮閣 영인본)
- 『春坊藏書總目』 (1905,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 『西庫書目』 (1868-1869,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외 조선시대 서목 32種

[단행본]

- 姜亞沙 編. 『影印珍本古籍文獻舉要』.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 국립중앙도서관 편. 『선본해제 I』.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0.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 日本尊經閣文庫所藏韓國本』. 대전: 국립문화재

- 연구소, 2006.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 日本尊宮内廳書陵部韓國本目録』.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録』.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김명희. 『중국 隋, 唐史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8.
- 김문경 저. 『당대의 사회와 종교』. 서울: 숭전대학교 출판부, 1984.
-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 羅樹寶. 『中國古代印刷史』.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93.
- 羅香林 著. 『唐代文化史研究』. 上海: 上海書店, 1992.
- 羅偉國·胡平 共編. 『古籍版本題記索引』. 上海: 上海書店出版, 1991.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지음, 임대희 옮김. 『중국의 역사 - 수당오대』. 서울: 혜안, 2001.
- 呂思勉 著. 『隋唐五代史』. 香港: 太平書局, 1980.
- 施廷鏞 著, 李雄飛 校訂. 『古籍珍稀版本知見錄』.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 劉伯驥 著. 『唐代政教史』. 臺北: 臺灣 中華書局, 1974.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賈貴榮·王冠輯 共編. 『宋元版書目題跋輯刊』 4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명센스 지음, 김인지 옮김. 『정관의 치』.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08.
- 모리스 꾸랑 著, 이희재 역. 『韓國書誌』. 서울: 一潮閣, 1994.
- 裴汝誠·王義耀 譯註, 黃永年 審閱. 『貞觀政要選譯』. 成都: 巴蜀書社, 1990.
- 白壽彝 總主編. 『中國通史(第6卷)』.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
- 변인석 지음. 『唐代文化史叢說』.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 北京大學圖書館 編. 『北京大學圖書館藏善本書目』. 北京: 北京大學圖書館, 1999.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혜의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서울: 삼경문화사, 2012.
- 釋尾春菴 編. 『朝鮮古書目録』.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宋連生 著. 『大唐盛世』. 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6.
- 神田信夫, 山根幸夫 共編. 『中國史籍解題辭典』. 東京: 燎原書店, 1989.
- 沈嘒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沈津 著. 『中國珍稀古籍善本書錄』.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 야마모토 시치헤이 지음, 고경문 옮김. 『帝王學』. 서울: 페이퍼로드, 2011.
- 오금 지음, 신동준 옮김. 『정관정요: 창업과 수성의 리더십』. 서울: 을유문화사, 2013.
- 오금 원저, 이언호 엮음. 『정관정요』. 서울: 큰방, 2013.

- 吳兢 撰, 崔虎 譯解. 『(新譯) 貞觀政要』. 서울: 弘新文化社, 2001.
- 吳兢 撰, 謝保成 集校. 『貞觀政要集校』. 北京: 中華書局, 2003.
- 吳宗國 著. 『隋唐五代簡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8.
- 王小甫 主編.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 原田種成 著. 『貞觀政要』. 東京: 明治書院, 1983.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윤병태. 『한국 도서목록의 사적 연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1992.
- 魏隱儒 編著. 『中國古籍印刷史』.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4.
- 魏全瑞 主編. 『隋唐史論』. 西安: 三秦出版社, 2007.
- 李斌城 主編. 『唐代文化 上·中·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李致忠. 『中國典籍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
- 任繼愈 主編. 『中國版本文化叢書 - 宋本』.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任繼愈 主編. 『中國版本文化叢書 - 元本』.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任繼愈 主編. 『中國版本文化叢書 - 明本』.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자오커야오·쉬다오원 지음, 김정희 옮김. 『당태종 평전』. 서울: 민음사, 2011.
- 張東翼 著.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壹-玖』. 北京: 中華書局, 2004.
- 張秀民 著. 『中國印刷史(上·下)』.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6.
- 長澤規矩也. 『宋元版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83.
- 鄭亨愚·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一冊-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上·下』. 서울: 지영사, 1998.
- 靜嘉堂文庫 編. 『靜嘉堂文庫宋元版圖錄』 2冊(圖版篇·解題篇). 東京: 汲古書院, 1992.
- 조계영 외저.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 서울: 소명출판, 2014.
- 中國國家圖書館·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 『第一·二·三批 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26冊.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8-2012.
- 趙克堯·許道助 共著. 『唐太宗傳』. 北京: 北京人民出版社, 1989.
- 陳舜臣 著, 廖爲智 譯. 『大唐帝國: 隋亂唐盛三百年』. 北京: 新星出版社, 2007.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椎名宏雄 著. 『宋元版禪籍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93.
- 한국고서협회 편. 『한국고서특별전』. 대구: 한국고서협회, 2010.
- 한국서지학회 편.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 日本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韓國本 目錄』. 서울: 한

국서지학회, 199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藏書閣韓國本解題 史部1-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黃有福·陳景富 지음, 權五哲 옮김. 『韓·中 佛教文化 交流史』. 서울: 까치, 1995.
黃永年 著. 『唐史史料學』.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2.

[논문]

- 瞿林樂. “『貞觀政要』成書的年代.” 『史學史資料』 1980年 03期. 29-31.
- 김명희. “당태종과 貞觀의 治.” 『역사학연구』 제19집(2002. 12). 853-892.
- 김상현. “신라와 당의 불교 전적 교류.” 『2007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1집(2008. 12). 112-123.
- 김소희. “조선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 연구.” 『서지학연구』 제61집(2015. 3). 101-123.
- 박남수. “9세기 신라의 대외 교역 물품과 그 성격.” 『史學研究』 제94호(2009. 6). 1-35.
- 박재우. “고려 전기 군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념.” 『한국사연구』 제132집(2006. 3). 1-31.
- 范大偉. “論『貞觀政要』的政治倫理思想.” 碩士學位論文. 黑龍江大學大學院. 2009.
- 謝保成. “試解『貞觀政要』成書之謎.” 『史學月刊』 1993年 02期. 29-36.
- 서원남. “宋代 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해서 본 사가목록서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제47호 (2007. 12). 499-521.
- 石見清裕. “唐太宗期の韓半島三國と中國との外交交渉史料.” 『日本研究』 22호(2004. 6). 5-23.
- 宋日基. “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2013. 3). 227-259.
- 楊堅琮. “論唐太宗的政治思想.” 碩士學位論文. 湘潭大學大學院. 2004.
- 楊豹. “『貞觀政要』中的政治倫理思想探微.” 『忻州師範學院學報』 2007年 05期. 80-82.
- 楊希義. “『貞觀政要』勘誤十例.” 『古籍整理研究學刊』 1987年 02期. 15-19.
- 吳春梅. “吳兢與『貞觀政要』研究.” 碩士學位論文. 廣西民族大學校 大學院. 2007.
-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서지적 분석.” 『書誌學研究』 제52집(2012. 9). 249-293.
- 옥영정. “조선 사신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書誌學研究』 제61집 (2015. 3). 5-29.
- 王光耀. “關於吳兢與『貞觀政要』的凡介問題.” 『古籍整理研究學刊』 1987年 02期. 9-21.
- 윤대수. “唐太宗의 통치술 연구.” 『教育論叢』 제19집(2002. 12). 193-273.
- 李萬生. “關於『貞觀政要』的成書時間問題.” 『貴州師範大學學報』 1993年 01期. 1-16.
- 李萬生. “關於『貞觀政要』材料來源的商討.” 『人文雜誌』 1999年 02期. 103-104.
- 李明杰. “明代國子監刻書略考.” 『大學圖書館學報』 2009年 第3期. 45-51.
- 이원호. “『貞觀政要』의 교육론적 이해.” 『教育哲學』 제10집(1992. 10). 305-330.

- 조광수. “당태종의 군주역할론.” 『21세기 정치학회보』 17집 3호(2007. 12). 1-17.
- 周峰. “『貞觀政要』在遼, 西夏, 金, 元四朝.” 『北方文物』 2009年 01期. 1-6.
- 池田溫. “『貞觀政要』之日本流傳與其影響.” 『國學研究』 1999年 第6卷. 1-29.
- 陳清慧. “明代藩府刻書輯考.” 『中國典籍與文化』 2010年 第2期. 1-14.
- 천혜봉. “內閣文庫의 한국고활자본에 대하여.” 『書誌學』 3호(1970. 5). 39-81.
- 崔立凱. “『貞觀政要』時間訛誤考訂十題.” 『臨沂師範學院學報』 2004年 02期. 111-115.
- 彭忠德. “『貞觀政要』의版本和佚文.” 『歷史研究』 2002年 06期. 172-176.
- 彭忠德. “吳兢及其『貞觀政要』略論.” 『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7年 02期. 5-10.
- 向輝. “關於『貞觀政要』明刊本的考釋與疑問.” 『文津流觴』 2009年 03期. 45-49.
- 許強. “談吳兢『貞觀政要』的編撰特色.” 『圖書館學刊』 2006年 03期. 123-124.
- 許道勳·趙克堯. “『貞觀政要』史料考辨.” 『夏旦學報』 1976年 06期. 91-94.
- 黃咏歎·彭忠德. “吳兢及其『貞觀政要』略論.” 『沙洋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7年 第02期. 5-10.
- 황천오. “貞觀政要.” 『國學資料』 25(1977). 1-7.

[웹사이트]

- 『高麗史』: <http://www.koreaa2z.com/>
- 『朝鮮王朝實錄』: <http://www.koreaa2z.com/>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日省錄』: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
- 『內閣日曆』: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
- 『增補文獻備考』: <http://www.krpia.co.kr/pcontent/>
- 『新增東國輿地勝覽』: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 한국고전적중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